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2. 01

2022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고용노동부

Contents

01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2
(2) 청년내일채움공제	4
(3) 온라인 청년센터	5
(4) 청년도전 지원사업	6
(5) 일학습병행	7
(6)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9
(7)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11
(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2
(9) 해외취업지원	14
(10)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확산	17
(1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18

02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12) 모성보호 육아 지원	20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24
(14)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26
(1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28
(16) 직장여린이집 지원	29
(17)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1

03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1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3
(19) 고령자 고용지원금	35
(2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36
(2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37
(2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39
(23) 고령자인재은행	40

04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24) 장애인 고용장려금	44
(2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45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46
(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48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49
(2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50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51
(3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52
(3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53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54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55
(35) 장애인 인턴제	58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59



Contents

(37)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61
(38)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62
(39)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63
(40)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64

05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41) 고용허가제도	66
(42)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68
(43)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70
(44)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72
(45)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73
(46)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74
(47)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77

06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48) 고용복지*센터	80
(49)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83
(50) 취약계층취업촉진	88
(51) 국민취업지원제도	89

07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최저임금 지원

(52) 일자리 안정자금	92
---------------------	----

고용장려금

(53) 고용유지지원금	94
(54) 고용창출장려금(총괄)	96
(55) 일자리함께하기지원	98
(56)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100
(57) 신증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102
(58) 고용촉진장려금	104
(59) 고용안정장려금(총괄)	106
(6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08
(6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10
(62) 정규직 전환 지원	113
(6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115

사회적기업

(64) 사회적기업 육성	117
(65) 사회적기업가 육성	119

지역고용

(6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20
(67)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121
(6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122
(69) 고용위기지역 지정	123
(70)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125



Contents

기 타

(71) 고용영향평가제도	127
(72) 고용형태공시제도	128
(73) 고용노동 통계 조사	130
(74) 인력수급전망	132

08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75) 고용보험제도	134
(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136
(77) 구직급여·연장급여	137
(78) 취업촉진수당	139
(7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사업) 사업	140
(80) 자영업자 고용보험	141
(81) 실업크레딧 지원	143
(82)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144
(83) 건설일용노동자 기능향상지원	145
(84) 건설노동자 취업지원	146
(85) 산재보험제도	147
(86) 산재보험급여	149

09 직업능력개발 지원

구직자

(87) 국민내일배움카드	152
(87-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154

(87-2)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155
(87-3)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	156
(87-4) K-Digital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157

사업주

(8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58
(88-1) K-Digital Platform	160
(8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162
(90) 중소기업 훈련 지원	164

기 타

(91)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166
(92)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69
(9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심사평가	171
(9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73
(95) 숙련기술 장려	174

10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개선

(96)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178
(97)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179
(98)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81
(9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84



Contents

차별개선

(100)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186
(101) 근로자 파견제도	187
(10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91
(103)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194

임금보장

(104) 최저임금보장제도	195
(10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97
(106) 대지급금제도	199
(107)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201
(108)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202
(109)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203
(110) 무료법률구조지원	205

근로복지

(111) 퇴직연금제도	207
(112)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210
(11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211
(11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12
(115) 근로복지기금 지원	214
(116)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컨설팅 지원	215
(117) 우리사주제도	216
(118)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218
(11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220
(120) 코로나 피해 고용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용자	222
(121)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223
(122)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224
(123) 근로자 문화예술제	226

11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예방

(124) 업종별 재해예방	228
(125) 유해·위험기계등 제조등록업체 자금 지원	230
(126)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231
(127) 유해작업환경 개선	233
(128) 근로자 건강보호	234
(129) 산재예방시설 융자	236
(13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237
(131)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240
(13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242

산재근로자

(133)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43
(134)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44
(135)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245
(136)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246
(13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47
(138)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248
(139) 진폐위로금 지급	249



Contents

12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140) 근로시간 면제제도	252
(14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254
(142) 노동쟁의 조정	255
(143) 노사협의회	258
(144) 부당노동행위	259
(145)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261

노사협력

(146)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263
(147)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265
(148)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266
(149)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269

13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72
---------------------------	-----

14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282
-----------------------	-----



찾아보기

★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제도

● 고용서비스 지원(채용·상담·정보제공)

-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 2
- (4) 청년도전 지원사업 / 6
- (14)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24
- (41) 고용허가제도 / 62
- (42)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 64
- (43)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 66
- (46)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70
- (47)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73
- (48) 고용복지+센터 / 76
- (135)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 235

●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 2
- (2) 청년내일채움공제 / 4
- (1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 18
-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24
- (16) 직장어린이집 지원 / 29
- (18)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33
- (19) 고령자 고용지원금 / 35
- (24) 장애인 고용장려금 / 44
- (2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45
-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46



찾아보기

- (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48
-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49
- (2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50
-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51
- (3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52
- (3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 53
- (35) 장애인 인턴제 / 58
- (38)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 62
- (39)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60
- (52) 일자리 안정자금 / 92
- (53) 고용유지지원금 / 94
- (54)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96
- (55)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98
- (56)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100
- (57)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102
- (58) 고용촉진장려금 / 104
- (59) 고용안정장려금(총괄) / 106
- (60)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108
- (6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10
- (62) 정규직 전환 지원 / 113
- (6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115
- (65) 사회적기업 육성 / 119
- (67)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121
- (7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사업) 사업 / 140
- (97)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179
- (98)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81
- (108)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202
- (11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212



찾아보기

- (115) 근로복지기금 지원 / 214
- (116)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컨설팅 지원 / 215
- (117) 우리사주제도 / 216
- (118)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218
- (120) 코로나 피해 고용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융자 / 222
- (125) 유해·위험기계등 제조등록업체 자금 지원 / 230
- (129) 산재예방시설 융자 / 236
- (13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237
- (131)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240
- (134)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 244
- (146)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 263
- (148)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지원 / 266

● 직업능력개발 지원

- (5) 일학습병행 / 7
- (10)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확산 / 17
- (8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158
- (88-1) K-Digital Platform / 160
- (8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162
- (90) 중소기업 훈련 지원 / 164



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제도

● 고용서비스 지원(상담·정보제공)

- (14)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26
- (17)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31



찾아보기

- (42)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 68
- (43)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 70
- (44)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 72
- (45)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 73
- (46)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74
- (47)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77
- (48) 고용복지*센터 / 80

●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12) 모성보호 육아 지원 / 20
- (1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28
-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49
-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51
- (7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사업) 사업 / 140
- (85) 산재보험급여 / 147
- (107)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 201
- (109)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203
- (110) 무료법률 구조 지원 / 205
- (118)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218
- (11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220
- (120) 코로나 피해 고용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융자 / 222
- (121)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23
- (122)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 224
- (123) 근로자 문화예술제 / 226
- (136)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246
- (13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247



찾아보기

(138)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 248

(139) 진폐위로금 지급 / 249

● 직업능력개발 지원

(2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39

(87) 국민내일배움카드 / 152

(90) 중소기업 훈련 지원 / 164

(95) 숙련기술 장려 / 174

★

취업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

● 고용서비스 지원(진로지도·직장체험·상담·정보제공)

(2) 청년내일채움공제 / 4

(3) 온라인 청년센터 / 5

(4) 청년도전 지원사업 / 6

(7)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 11

(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12

(9) 해외취업지원 / 14

(14)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26

(2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36

(2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37

(23) 고령자인재은행 / 40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59

(37)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61

(40)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 64



찾아보기

- (48) 고용복지+센터 / 80
- (49)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83
- (50) 취약계층취업촉진 / 88
- (51) 국민취업지원제도 / 89
- (65) 사회적기업가 육성 / 119
- (84) 건설노동자 취업지원 / 146

●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77) 구직급여·연장급여 / 137
- (78) 취업촉진수당 / 139
- (80) 자영업자 고용보험 / 141
- (81) 실업크레딧 지원 / 143
- (82)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 144
- (121)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23

● 직업능력개발 지원

- (5) 일학습병행 / 7
- (2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39
-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54
-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55
- (83) 건설일용노동자 기능향상 지원 / 145
- (87) 국민내일배움카드 / 152
- (87-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154
- (87-2)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 155
- (87-3)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 156



찾아보기

- (87-4) 초·중급 디지털 훈련비 지원(K-Digital Credit) / 157
- (92)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169
- (9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 평가 / 171
- (9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173
- (133)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243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고용서비스

- (12) 모성보호 육아 지원 / 20
- (50) 취약계층취업촉진 / 88
- (73) 고용노동 통계 조사 / 130
- (75) 고용보험제도 / 134
- (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136
- (91)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166
- (9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184

근로 및 노사 관계

- (72) 고용형태공시제도 / 128
- (101) 근로자 파견제도 / 187
- (100)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 186
- (10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191
- (103)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 194
- (104) 최저임금보장제도 / 195
- (10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197



찾아보기

- (106) 대지급금제도 / 199
- (111) 퇴직연금제도 / 207
- (112)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 210
- (140) 근로시간 면제제도 / 252
- (14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254
- (142) 노동쟁의 조정 / 255
- (143) 노사협의회 / 258
- (144) 부당노동행위 / 259
- (145)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261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 (85) 산재보험제도 / 147
- (124) 업종별 재해예방 / 228
- (126)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231
- (127) 유해작업환경 개선 / 233
- (128) 근로자 건강보호 / 234
- (13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 242

● 기 타

- (6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120
- (6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122
- (69) 고용위기지역 지정 / 123
- (71) 고용영향 평가제도 / 127
- (74) 인력수급전망 / 132
- (147)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 265
- (149)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 269

01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사업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②,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③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사업주(법인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를 들어,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부터 '21.8.22.까지가 최소고용유지기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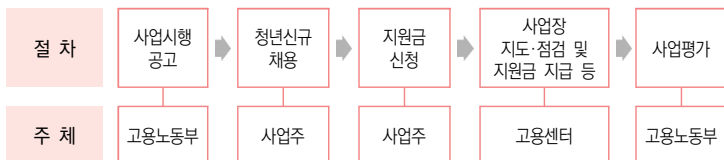
③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신청기한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이후 6개월 단위로 신청)

- * 신청기한이 '22년도에 속하는 경우 '22년에 신청 가능
(예시) '21.8.10 채용자의 경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22.2.9까지이므로 '22.3.1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사업 추진체계



■ 참여(신청) 방법

-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 사업 규모

- '21년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8.9만명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지원 인원 8.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2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 사업목적

-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임금총액 300만원 이하,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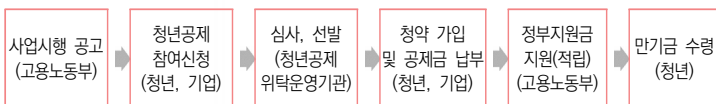
** 5인 미만: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만기금 1,200만원(청년 300 + 기업 300 + 정부 600)

* 청년은 매월 12.5만원 납입, 기업은 2년간 최대 300만원 적립('30인 미만' 전액 정부지원, '30~49인' 20% 부담, '50~199인' 50%부담, '200인 이상' 100% 부담)

■ 사업추진체계



■ 참여(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운영기관) → 청약신청(www.sbcplan.or.kr)

3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 사업목적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공간 정보 및 정책안내·상담을 제공하는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정책정보) 일자리, 금융, 주거 등 청년 관련 중앙·지자체 정책정보 제공, 맞춤형 정책정보 검색 기능 제공
- (공간정보) 전국 청년공간(고용센터, 지자체, 민간) 정보 제공, 공간별 운영 서비스 정보 제공
-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채팅, 전화, 게시판 등을 통해 정책 안내 및 개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예산 출연 →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수행

■ 추진현황

- 298개 중앙·3,593개 지자체 청년정책과 220개 청년공간 정보 종합 제공 중('21.12월말 기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보》

- 청년정책: 청년정책 통합검색, 정책비교(청년정책 비교 검색)
- 청년공간: 청년공간검색(지도), 공간별 프로그램, 예약사이트 링크
- 청년상담실: 심층 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톡상담, 게시판 상담, FAQ
- 청년소식: 공지사항, 청년소식PICK(취업정보관련 사이트 링크), 청년꿀팁

4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44, 746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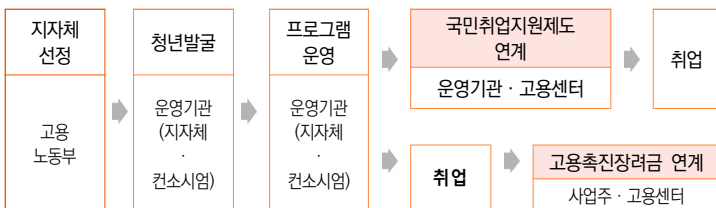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구직단념청년 등
 -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 (구직단념청년 등)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7,000명
-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 (지방자치단체) 사업운영비(청년 1인당 80만원)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이수시 1인당 20만원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 사업추진체계



5 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일학습병행 홈페이지(www.hrd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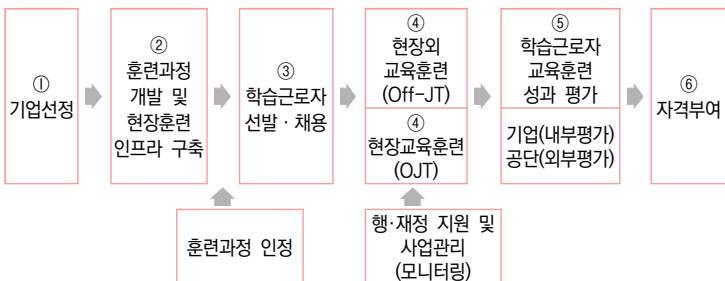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사업내용

- (선정 대상)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 (학습근로자 조건) 1년 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 * 코로나19 특별조치로 훈련 시작일이 '22.6.30. 기간 내 해당하는 과정에 한해 2년 이내 신규 입사자 참여가능
- (지원내용) ▲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 ▲ 현장(외)훈련 훈련비, ▲ 훈련장려금, ▲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양성교육 지원
- (자격 부여) 훈련 수료 후, 훈련성과 평가 →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 사업추진체계



■ 참여 유형

구분	대상 및 유형		주요 내용
재직자 단계	단독기업형		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 실시
	공동훈련센터형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 실시
재학생 단계	고교 단계 (특성학교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을 통한 현장성 제고
	전문대학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단계 일학습병행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유도
	대학교 단계 (4년제大 3~4학년)	IPP형	3~4학년이 학기제 등 방식(2~6月)으로 장기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 참여
後학습	P-TECH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

* P-TECH: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 주요 특징

-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 교육 운영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주도로 개발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교육훈련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시간, 현장교사,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교육훈련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이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 습득한 직무능력을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평가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학력 중심이 아님) → 자격의 통용성 확보

6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홈페이지(www.i-hrd.net)

■ 사업목적

-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내용

- (훈련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 * 채용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50% 이상 청년층 참여 의무화
- (훈련기간) 재직자(약 2~3주 내외, 30~40시간), 채용예정자(5개월 이내)
- (훈련내용) 해당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계·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과정 운영 및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 * 개별 산업현장의 특화된 훈련 수요대응을 위해 NCS 적용 비율 탄력적 운용

■ 지원 내용

- (훈련비용)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훈련비용(실비) 지원
 - *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분도 계좌 잔액 차감되지 않음)
- (인프라지원금) 산업별 협·단체 및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지원
 - 산업별 협·단체: 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공동훈련센터: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 사업단 현황

- 산업별 협·단체와 공동훈련센터가 1:1 매칭된 사업단 9개소 선정

사업단 선정 현황 (*22.1월 기준)

연번	산업 분야	사업단	
		산업별 협·단체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1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2	관광·레저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3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아주대학교
4	스마트공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ISC)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5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ISC)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6	금형, 금속가공 등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뿌리ISC)	한국산업기술협회
7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차ISC)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	정보통신	벤처기업협회	한국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
9	정보기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IT교육재단

7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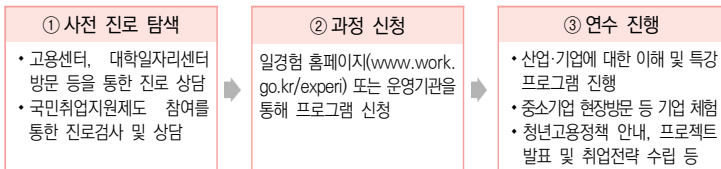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 (유형) 1유형: 중소기업 인식 제고 및 청년 기업 체험, 2유형: 1회성 체험을 넘어 중소기업 채용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제공
- (지원내용)
 - (참여자) 1일 5시간 이상, 5일 이내(1유형)·2주 이내(2유형) 연수프로그램 참가(참가비 무료)
 - (운영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원(인센티브는 2유형에 한해 지원)

■ 사업추진체계



■ 프로그램 내용

- (1유형) 기업 견학,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과의 대화 등
- (2유형) 최대 2주간 단기 프로젝트 실시 및 피드백, 모의 면접 등

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jobyoung)

■ 사업목적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21년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종료되는 대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대상 및 기능을 확대 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추진('21년 이전 대학일자리센터 선정 대학은 사업 유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사업방식)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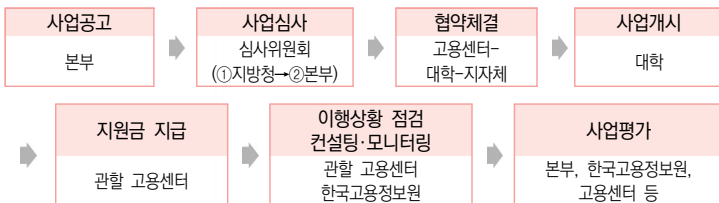
* 거점형: 7.5억(정부 4.5억, 보조율 60%), 지역형: 3억(정부 1억, 보조율 66.7%)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거점형: 재학생·졸업생(2년 이내)·지역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특화프로그램

지역형: 재학생·졸업생(2년 이내)·지역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 사업추진체계



■ 추진현황

- 전국 100개교('21년 기준, '22년 사업 규모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22년 사업예산 325억)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9

해외취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9997),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

■ 사업목적

-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K-Move 스쿨), 해외 취업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지원

■ 사업내용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 (목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 취업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K-Move스쿨

- (목적)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직무교육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22년 3,200명)
- (지원내용)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원(연수기관 지급)
 - * 1인당 최대 단기(200~600시간 미만) 580만원, 장기(600시간 이상) 최대 800만원, 트랙II (1,000시간 이상) 최대 1,350만원, 대한연합(600시간 이상)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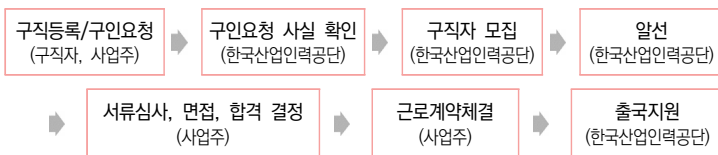
①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로 온라인 신청



② 선발방법: 연수과정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

해외취업알선

- (목적)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 및 해외취업 희망자와 구인업체간의 알선 지원
- (지원대상)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 사업추진체계



국내 해외취업센터

- (주요내용)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상시채용관 운영 (면접 지원),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지원
- (이용방법) 직접 방문 또는 월드잡(www.worldjob.or.kr)을 통해 예약 가능
 - *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출구)
 - *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시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드 빌딩 6층(시창역 1번출구)
 - * (군산청년센터) 전북 군산시 내항1길 4 군산상공회의소 4층
 - * (통영청년센터) 경남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세움 2층

해외 K-Move 센터

- (주요내용) 해외 코트라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등
- (현황) 일본(도쿄, 오사카, 나고야), 미국(LA, 뉴욕),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중국(베이징), 캐나다(밴쿠버), 호주(시드니), 유럽(프랑크푸르트), 중남미(멕시코 시티), 중동(UAE),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한국무역협회 등 17개소
- (이용방법)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K-Move센터 정보 확인

해외취업정착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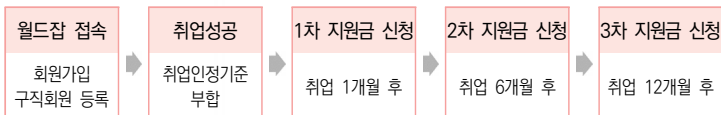
- (목적) 청년의 성공적인 해외취업 및 조기정착·근속 유도
- (지원대상) ①만 34세 이하 해외취업자, ②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③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600만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 (지원내용) 신흥국 취업자는 최대 600만원, 선진국 취업자는 최대 400만원 지급

* 취업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후)

(단위: 만원)

지급시점	지원인원	지원금액		
		취업 1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신흥국	1,400명	300	100	200
선진국	2,700명	200	100	100

• 사업추진체계



10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56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정채용지원 TF ☎ 052-714-8716
 관련 홈페이지: NCS 종합포털사이트(www.ncs.go.kr)

■ 사업 목적

- 공공·민간의 채용과정에서 출신지·가족관계·신체적 조건(키, 체중, 외모)·학벌 등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확산
-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사업 내용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민간 기업의 실력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22.12월)
 - * (공공)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실시 및 면접신고센터 운영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및 내부면접관 상설교육과정 운영
 - * (민간) ▲민간 기업 400여개 컨설팅 지원 및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 채용공고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공공·민간 기관의 입사지원서 개선 및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 실시('22.12월)
- 소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서류심사, 필기평가(직업기초능력 문제 Pool 제공), 면접운영 등 단계별 집중 컨설팅 실시
-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무전문가를 활용한 모의면접 및 맞춤형 피드백 제공, 직무능력 중심 채용 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 첨삭 등 취업 코칭 솔루션 제공(수시)
 - * 하·동계 방학시기, 공공기관 공채시기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춰 탄력적 운영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 전용 웹페이지 구축·컨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

1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관련 홈페이지: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 사업 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월 80만원(최대 1년간)지원
- (지원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02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12 모성보호 육아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 휴가 제도 활용 도모
- (예술인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상동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①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정부) 최대 월 160 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당액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하한액 최저임금액)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②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③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예술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 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지급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60만원)	①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 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3+3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 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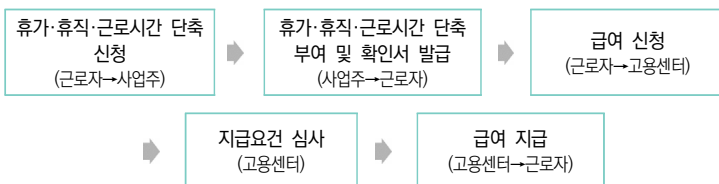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②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 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자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 (‘19.10.1. 시행)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 5일분, 상한액 382,770원 지원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목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특례* 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대체인력 지원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4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체인력뱅크(수도권 ☎ 1577-0221, 지방권 ☎ 1577-8505)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민간 대체인력뱅크 홈페이지(<http://www.대체인력뱅크.com>)

■ 사업목적

- 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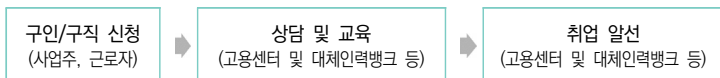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 (지원내용) 기업에는 맞춤 인재를 추천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
 - (기업) 맞춤인재 추천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서비스, 장기미채용 기업은 맞춤컨설팅을 통해 원인 분석 및 집중 알선 서비스 제공
 - (구직자) 무료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진행, 미취업자의 재교육 및 집중 알선과 필요 시 동행 면접 지원 등

종 류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8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구직자) 무료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진행, 미취업자의 재교육 및 집중 알선과 필요 시 동행 면접 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1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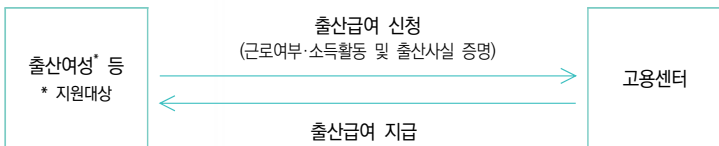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지원내용) 총 150만원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6 직장어린이집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2670-0411~25, 대전 ☎ 042-870-9111-6, 부산 ☎ 051-320-8182~7)

■ 사업목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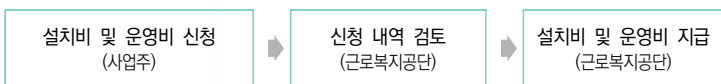
-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공동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동)		시설개보수비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운영비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138만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②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등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
 - * 국가(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8:2로 매칭하여 설치
 - * '22년까지 총 13개소 개원(서울 강서구, 경기 시흥시, 충남 계룡시, 광주, 화성, 전주, 서울 마포, 서울 강서구(2개소), 임실, 영주, 울산 북구, 인천 연수구)
 - (입소순위) 중소기업·비정규직 맞벌이 가정을 최우선 배정
 - (운영시간) 거점형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단축·연장 운영
-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 설치공사 지원,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17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사업내용(새일센터)

구 분		내 용	사 업 수 행
고용 노동부	직업상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여성 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연계	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 (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취·창업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 신청절차

-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 1544-1199)

03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1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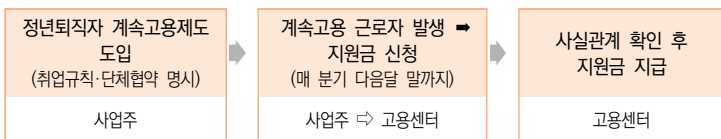
목 적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 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
- 지원요건: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 단,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한도)

지원절차



19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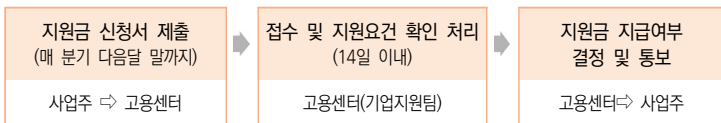
목 적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지원 요건: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지원 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지원절차



2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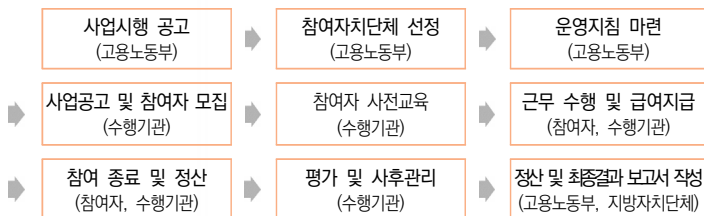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 대응
 - 퇴직인력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일자리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미취업자
 -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참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기관, 행정·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수당 지급
- 참여시간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 사업추진체계



2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4060hope)

■ 사업목적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지원내용
 - (생애경력설계)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관리를 지원
 - *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를 토대로 재취업·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등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재직자) 1:1 상담, 심리안정·변화관리 등 전직교육, 역량진단, 취·창업 정보 제공 등 전직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구직자) 1:1상담, 취업알선, 재취업지원교육, 취·창업 정보 제공, 동아리 운영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와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지원
 - ※ 위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구인알선 상담, 지원금 제도 안내 등을 통한 중장년 인력 채용 및 경력관리 지원

■ 사업추진체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현황 ('21.12월 기준)

기관명	소재지	대표 연락처
노사발전재단서울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급빌딩 6, 7층	02-6021-1101
노사발전재단서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3길 29, 3층 (키콕스벤처센터)	02-3488-1900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서울고용복지센터 3층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서초동) 서초고용센터 2층	02-2004-7341~7343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2호 (상암동)	02-3153-7960
노사발전재단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3층	032-260-3800
노사발전재단경기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인동빌딩 3층	031-8014-850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2층(기능동)	031-837-2719
평택상공회의소	경기 평택시 평택로 149(신대동) 1층	031-646-1042-43,46
고양상공회의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1(장항동) 라페스타 A동 4층	031-901-9197
안산상공회의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3층	031-410-3031
파주상공회의소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파주고용복지센터 8층	031-8071-4257
노사발전재단강원센터	강원 원주시 원로로 528, 2층	033-735-0971
노사발전재단충청센터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8 교원공회관 15층	042-489-3820
대전경영자총협회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2(문화동)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6층	042-253-705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 아산시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5층	041-559-5766
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6번길 76(송정동), 직지스마트타워 908호	043-270-7500
노사발전재단부산센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81 재능빌딩 10-11층	051-860-1300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12층	051-647-0453
노사발전재단울산센터	울산시 북구 산업로 1016 1층	052-289-8975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시 남구 대학로 60 3층(무거동)	052-277-9491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6, 센트럴빌딩 5층	055-266-8317
(사)한국커리어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1길 6-1, 2층	055-632-2254
노사발전재단대구센터	대구시 중구 국제보성로 648 우리병원 7층	053-550-3000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복지센터 3층	054-461-5519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대신증권 8층	054-727-2020
노사발전재단광주센터	광주 북구 급남로 136 교보빌딩 4층	062-531-5712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 북구 급남로 121 광주고용복지센터 1층	062-609-8964
노사발전재단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61, 5층	063-222-1840
목포상공회의소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목포고용복지센터 2층	061-280-0556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 순천시 우석로 7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2층	061-741-0096
노사발전재단제주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상록회관 2층	064-710-4501

2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lifeplan)

■ 사업목적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도록 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15년 ~ 계속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지원내용
 - (재직자)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생애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 설계 지원

* 워크넷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한 경력개발 준비 지원

프로그램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3h	3h	3h	3h	2~3h
재직자	40대 경력전성	경력관리	변화관리	평판 및 네트워킹 관리	성과관리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50대 경력확장	나와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60대 경력공유	능동적인 인생을 위한 숨고르기	삶의 가치 발견하기	삶의 균형 잡기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한 뛰어들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구직자		1.5~5h	1.5~6h	1.5~3h	1.5~6h	2~3h
		인생 들여다보기	인생 되돌아보기	제 2인생 계획하기	제 2인생 실행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 사업추진체계



23 고령자인재은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목적

- 고령사회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의 장년
- 지원내용
 -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

■ 사업추진체계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현황 ('21.12월)

기 관 명	연락처	기 관 명	연락처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02-719-6053	진주YWCA	055-755-3463
서울서부여성발전센터	02-2607-9926	대구별여성인력개발센터	053-285-1331
북부종합사회복지관	02-3391-2217	포항YWCA	054-274-4445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02-916-9190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070-8895-7720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02-3399-7637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054-639-0550
동작종합사회복지관	02-824-7082	안동YMCA	054-858-8219
의정부 YWCA	031-853-6340	광주YWCA	062-674-1055
남양주 YWCA	031-577-7762	노동실업광주센터	062-225-4139
수원 YWCA	031-252-5111	전주YWCA	063-224-5501
평택 YWCA	031-651-7797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063-833-0334
춘천 YWCA	033-254-4878	익산YWCA	063-857-8911
강릉 YWCA	033-651-1385	군산노인종합복지관	063-446-7577
속초 YWCA	033-635-3524	목포YWCA	061-242-1611
원주 YWCA	033-744-6091	순천 YWCA	061-744-9004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54	여수 YWCA	061-665-5060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051-503-8944	세종YWCA	044-862-0873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9198	천안YWCA	041-578-5863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051-337-5959	충주YWCA	043-845-1929
(사)경남고용복지센터	055-261-8523	제천YWCA	043-646-0085
울산YWCA	052-944-3523	제주YWCA	064-805-0060
양산YWCA	055-367-1144	서귀포YWCA	064-762-1407

04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24 장애인 고용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구 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사업추진체계



2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 (지원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지급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사업추진체계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I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 (1회, 최대 5천만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

사업추진체계



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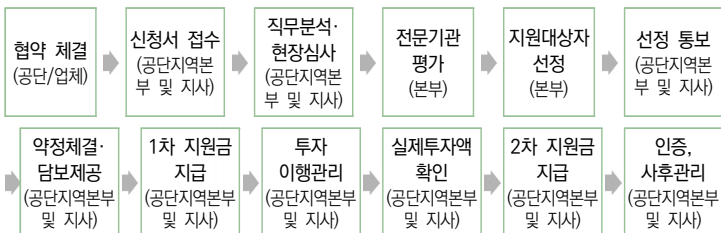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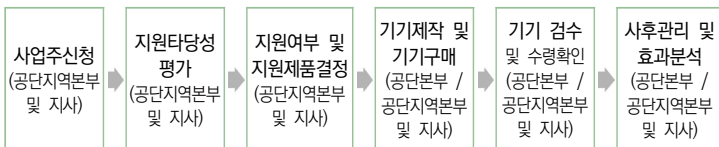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공무원
-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및 장애인공무원) 직업생활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자동차 개조 및 운전보조공학기기

신청대상	지원 구분	지원 한도
사업주, 장애인 공무원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 원 (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기개발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 고용유지조건 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의 기기(장애인 퇴사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무상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 사업추진체제



2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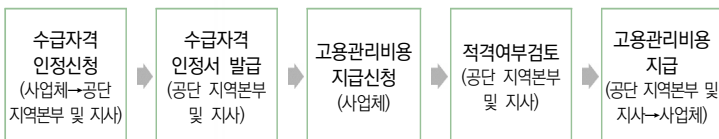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 적응력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추진체계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lead.or.kr)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단가: 시간당 9,160원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0,992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 사업추진체계



3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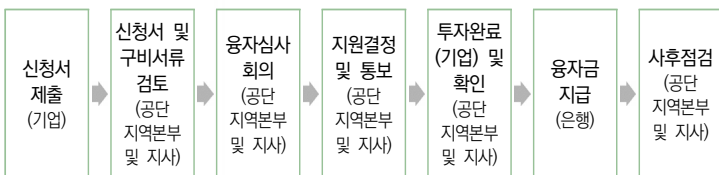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대출금리 1%, 8년 상환조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3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 경감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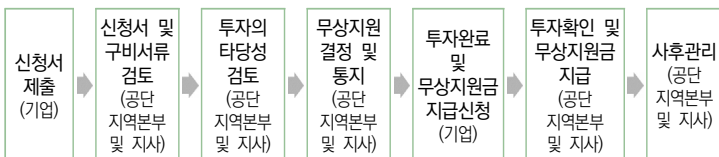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 사업추진체계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 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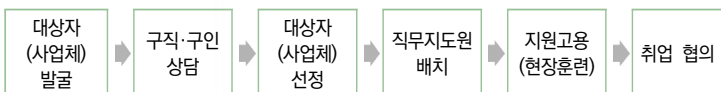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구 분		지원 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일비	18,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9,34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직무지도원: 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 실시

■ 사업추진체계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원(5), 훈련센터(맞춤6, IT특화맞춤2, 발달19),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수당 지급 (※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¹⁾
 - 맞춤훈련센터²⁾ 및 IT특화 맞춤훈련센터³⁾
 - 발달장애인훈련센터⁴⁾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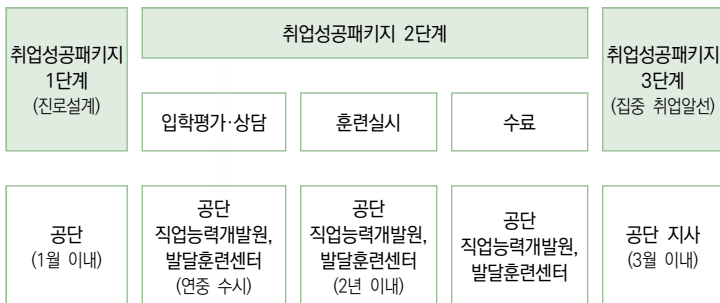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구 분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취성패 참여자 월 28.4만원)	
	훈련장려금	교 통 비	월 5만원
		식 비	월 6.6만원
교사수당(공공훈련기관에 한함)		훈련생 1인당 2만원 (최고 10만원 한도)	

- 1) 직업능력개발원 :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 2) 맞춤훈련센터 : 서울, 인천, 천안아산, 전주, 창원, 제주
- 3) IT특화 맞춤훈련센터: 구로디지털, 판교디지털
- 4) 발달장애인훈련센터 : 서울, 서울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사업추진체계

-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규훈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장애인훈련생 선택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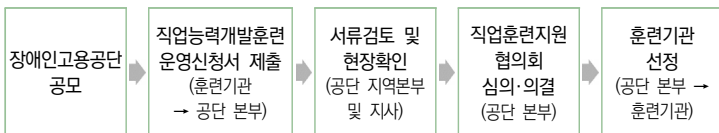
- 맞춤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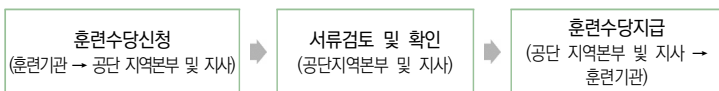
- * IT특화 맞춤훈련센터: IT 수준별 훈련과정과 기업 맞춤훈련 연계 운영
↳ (IT수준별 훈련) 훈련생 역량 수준별 IT 정규 훈련과정
(기업 맞춤훈련)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맞게 훈련과정의 탄력적 편성

● 공공·민간훈련기관 위탁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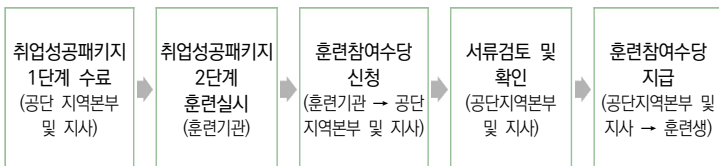
- 훈련기관 선정(민간훈련기관)



- 훈련수당 지급(공공훈련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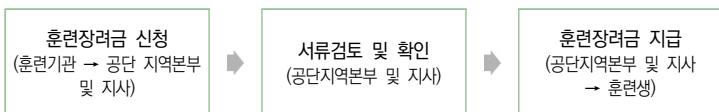


- 훈련참여수당 지급(민간훈련기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장애인훈련생 선택사항임

- 훈련장려금 지급(민간훈련기관)



35 장애인 인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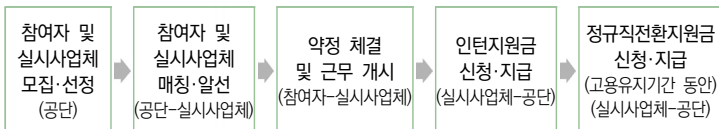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또는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을 채용한 사업체

*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자체 총 10개 장애유형

- (지원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 (지원내용)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 지원(최대한도 월80만원, 최대 6개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 동안추가 지원 (최대한도 65만원, 최대 6개월)

■ 사업추진체계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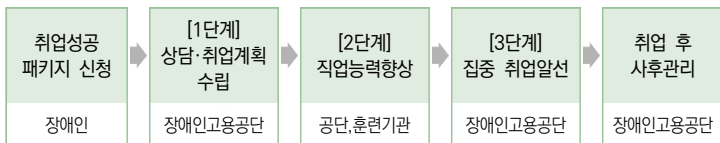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Ⅰ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Ⅱ 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 (지원내용)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실시 심층상담 포함 2회이상 상담실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원(1단계 필수) 지급
	집단 상담프로그램 희망자(선택)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이수	추가 참여수당 5만원 또는 10만원 지급
2단계 (직업훈련)	1단계 기본요건 충족 장애인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기존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지급 최대 12개월 지급
3단계 (취업알선)	- 1단계 기본요건 충족 장애인 - 2단계 수료 장애인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이행 시 - 저소득(중위소득50%이하)장애인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지급 (최대6개월)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 사업추진체계(절차)



37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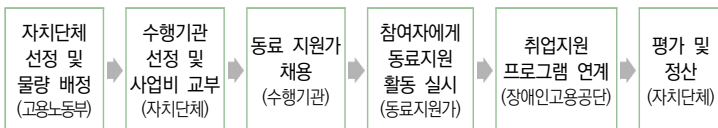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8,000명
 -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장애)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운영
- (지원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50%)
- (지원내용) 기본운영비·슈퍼바이저지원금·연계수당을 수행기관에 지원, 참여자 수당을 참여자에게 지원
 -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고용 1인당 월 87.5만원(월 60시간 기준) 지급
 - (슈퍼바이저 지원금) 동료지원가의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수행기관 70개소, 월 50만원)
 - (연계수당) 참여자가 공단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 또는 취업한 경우(연계자 1인당 20만원)
 - (참여자수당) 참여자가 동료지원활동 참여시 지급(1인당 1회 4.5천원, 최대 10회)

■ 사업추진체계



38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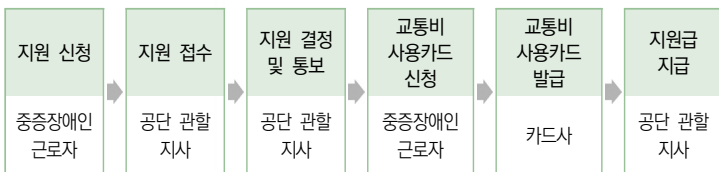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 사업추진체계



39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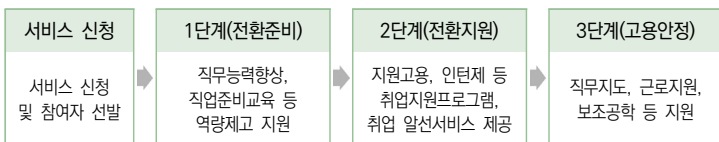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지원금(최대 월 80만원, 3년간 지원) 지급

■ 사업추진체계



40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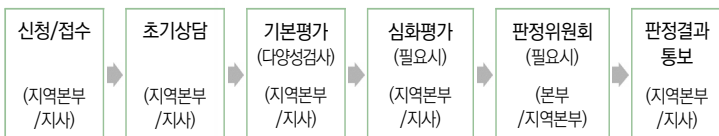
-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직업능력 및 작업환경 요구에 따라 고용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고용서비스 필요도 판정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천 및 필요한 고용서비스* 제공

*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출퇴근 비용 지원, 현장평가

■ 사업추진체계



05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41 고용허가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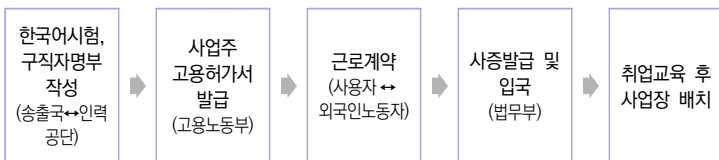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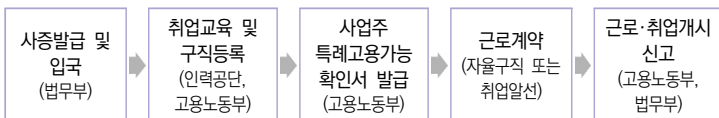


*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횡수 불포함)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35개 업종), 광업
- 도입 대상: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42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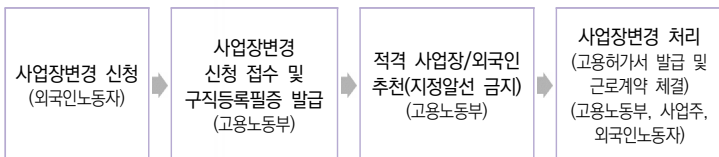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외국인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보호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속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 사업장변경 횟수
 -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 사업추진체계



- (외국인노동자)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43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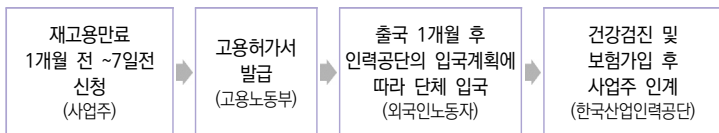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4년 10개월간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사업내용

-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 ① 4년10개월간 근무한 모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하고,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한 후, 최종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도 개별 사례별로 권익보호협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특례 고용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근무
 -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④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주요혜택)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1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1년10개월간 허용

■ 사업추진절차



44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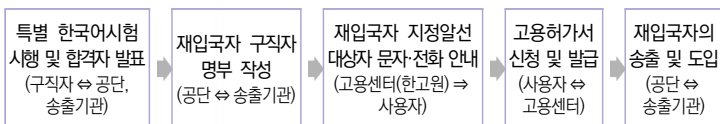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재고용만으로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적용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노동자
 -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 자격을 갖추어야 함

I 사업내용

- (요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입국)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출국 후 6개월 이후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지정알선)
- *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입국 가능

I 사업추진체계



* 재입국 임의알선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

45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사업목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 교육 등 지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개 거점센터, 31개 소지역센터) 불임 참조

- (외국인력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상담센터(콜센터, ☎1577-0071) 설치·운영
-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외국인노동자의 사용자와 갈등, 일상생활 고충,
언어소통문제 등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문
통역 지원
- (종합체류지원 서비스 지원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역순회 상담서비스 및 국가별 커뮤니티 현장
지원 서비스 지원
- (사업주 교육)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교육 실시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 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전 지방관서에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 지원방안 등 협의

*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노동자 단체 등으로 구성

46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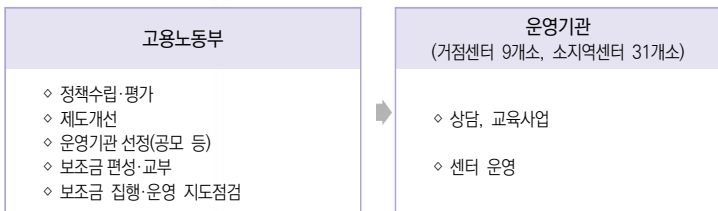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 지원
 -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활용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
- 지원내용
 - (상담)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및 갈등 중재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 (교육) 외국인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 교육 실시
 - (문화행사)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을 마련
 - (정보제공) 생활·법률 및 직업 관련 정보제공

■ 사업추진체계



붙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황

● 거점센터 (9개소)

연번	센터명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1	한국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특별시	02)6900-8000
2	의정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의정부시	031)838-9111
3	김해	인제대학교	경남 김해시	055)338-2727
4	창원	사회복지법인통도사자비원	경남 창원시	055)253-5270
5	인천	인천경총 및 한국노총 공동수급체	인천광역시	032)431-4545
6	대구	대구경총 및 한국노총 공동수급체	대구광역시	053)654-9700
7	천안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충남 천안시	041)411-7000
8	광주	(재)한국능력개발원 및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동수급체	광주광역시	062)946-1199
9	양산	(사)희망웅상	경남 양산시	055)912-0255

● 소지역센터 (31개소)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서울특별시	02-858-4115
2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광역시	032-874-3613
3	(사)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경기 김포시	031-982-7661
4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경기 오산시	031-372-9301
5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031-652-8855
6	(재)한국이주노동재단	경기 광주시	031-797-2688
7	천주교의정부교구 구리EXODUS	경기 구리시	031-566-1142
8	(사)함께하는 공동체	강원 원주시	070-7521-8097
9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 진천군	043-534-6009
10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041-541-9112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1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	042-631-6242
12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포항지부	경북 포항시	054-291-0191
13	(사)외국인과 동행	경북 경주시	054-705-1828
14	꿈을 이루는 사람들	경북 구미시	054-458-0755
15	천주교마산교구 창원이주민센터	경남 창원시	055-275-8203
16	진주사랑의 집	경남 진주시	055-763-0707
17	성요셉노동자의 집	전북 익산시	063-852-6949
18	(사)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광주광역시	062-943-8930
19	광주이주민지원센터	광주광역시	062-959-9335
20	로드월드비전	전남 순천시	061-724-1127
21	여수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전남 여수시	061-644-3927
22	전남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	전남 영암군	061-462-8389
23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특별자치도	064-712-1141
24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수원시	031-223-0075
25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남양주시	031-594-5821
26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시흥시	031-434-0411
27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063-243-0333
28	글로벌미션센터	경기 안산시	070-8600-8040
29	(사)울산외국인센터	울산광역시	052-291-3133
30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경기 안산시	031-495-2288
31	(사)홍성이주민센터	충남 홍성군	070-4150-9722

47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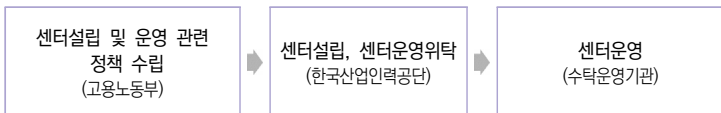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고용·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나,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
 -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 기본 정보 안내

■ 사업추진체계



※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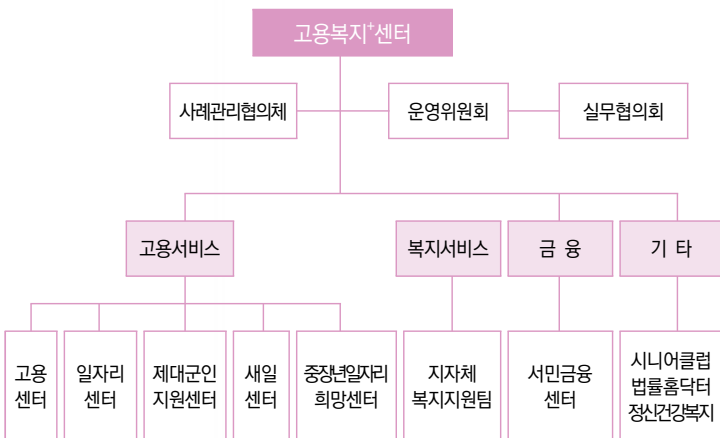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48 고용복지+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

■ 사업 개요

- (목적)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업무 체계도) 각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협의체로,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연계·통합



Ⅰ 주요 제공 서비스

서비스 분류		참여기관	주요 서비스
고용 서비스	종합 서비스	고용센터	실직자 구직급여 및 재취업 지원,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정 사업 등 종합 고용 서비스 제공
	지역맞춤형 서비스	시·군·구 일자리센터	지역별 구직자 취업지원 및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별 특화 서비스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서비스 제공
		제대군인 지원센터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안착 지원
복지서비스		시·군·구 복지공무원	사회 복지 서비스 상담·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자원 연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 등 상담·제공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민, 영세 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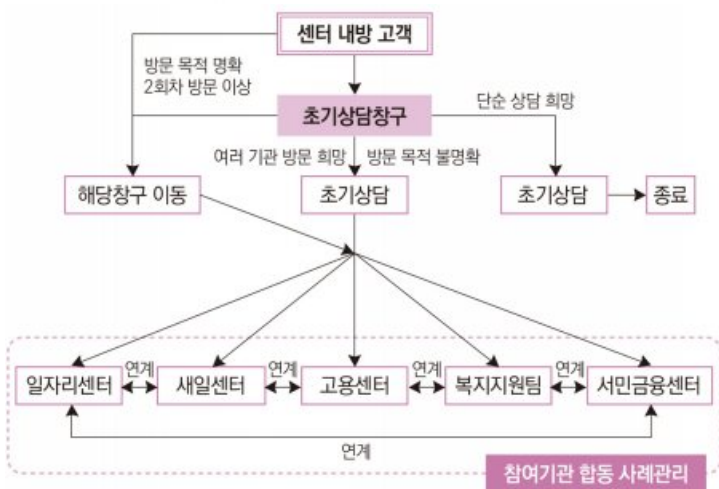
Ⅰ 운영 방향

- (통합 서비스)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적합한 고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신청·수령 가능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등을 조기 해소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을 고용의 영역으로 끌어 내어 탈수급 지원
 - 차상위계층 등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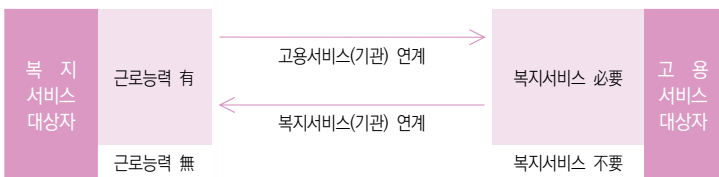
- (협업)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서비스 프로세스

- (프로세스)



- (서비스 연계)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 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49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취업알선서비스

■ 사업목적

-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각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

■ 사업내용

- 구직자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워크넷에 입력·관리하고 구직 희망사항 및 상담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

채용지원서비스

■ 사업목적

- 신속한 구인·구직의 연결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일반구직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

■ 사업내용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 채용박람회 : 주로 외부시설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채용행사로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 현장면접 이외에 직업·고용 관련정보나 이력서·면접 클리닉, 훈련·자격상담 등의 부대행사를 병행 실시
- (동행면접) 면접경험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면접 시 고용센터 상담자가 동행하여 면접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직원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채용심사 서류 접수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

직업지도서비스

■ 사업목적

- 구직자, 학생 등이 자신의 희망, 관심, 자격 및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직장, 직장
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 사업내용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취업의욕 향상 및 취업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3~4일 간 운영하는 집단상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성 취	구직자 전체	취업의욕 증진, 취업정보 수집, 지원서류 작성법, 면접 실습 등
올라	취약 청년층(NEET)	마음열기, 마음모으기(협력), 의사소통 및 생애설계와 비전수립 등
WiCi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의 취업세계에 대한 이해, 외국인 구직자로서 자존감 향상,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등
HI	고졸(예정)청년층	고졸청년층의 자기탐색, 일자리탐색, 구직기술 수준 제고
청년취업역량	19~34세 청년구직자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행복내일	취업취약계층	의욕강화와 자신감 향상, 자기진단과 생애설계, 취업준비와 구직기술
직업행복	출소예정자	마음열기, 의사소통, 직업탐색, 직업생활·예절, 구직기술 습득, 행복한 내일설계
CAP@	15~29세 청년 구직자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탐색, 강점 강화, 면접 실습 등
취업희망	취약계층 구직자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40대 취업역량	40대 구직자	40대 구직자들의 진로전환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역량 강화, 취업의지 고취, 구직기술 향상
성장	고령 구직자	화 다스리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방법, 대인관계, 구직기술 등
신중년 재취업설계	신중년(5060)	본인의 특성과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실천가능한 재취업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도록 지원

-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 업·직종이나 구직자 특성 등에 맞게 온라인 상호 작용 도구를 활용하여 공간적 제약 없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5명 내외, 3~4일 간 운영되는 온라인·비대면 전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청년취업 ON	청년	3개 직무군별(경영사무/영업/IT) 청년층 구직기술 컨설팅 중심 프로그램 직무군별 주요 역량이해와 관련된 개인 경험연계 중심 구직기술 강화
내일또다시	성인	기계설치·정비·생산직종과 사회복지·돌봄직종 재취업지원프로그램 재취업 구직필요역량 중 정보탐색역량 강화에 초점
마음뚫꼭 심플	취업취약계층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의 자기이해를 통한 구직의욕 향상 프로그램 생애스토리를 통한 5인 이내 비대면집단상담프로그램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구분	프로그램 명	내용
취업 의욕	행복한 대화 이끌기	효과적인 대화법 익히기, 화 다스리는 법 익히기 등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생각 가다듬기, SWOT 분석 등
	나를 이해하기	직업가치탐색, 장점 및 보유능력 확인, 경력기술서 작성 등
기초 직업 능력	대인관계능력향상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의사소통능력향상	문서이해능력, 타인 의견 경청능력, 대화법, 전화사용법 등
	자기개발능력향상	흥미·적성 이해, 자신의 역할 이해, 자기관리, 경력개발관리 등
	직업윤리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책임감, 봉사정신, 준법성, 직장예절 등
구직 기술	취업목표 정하기	의사결정과정 간접 체험하기, 합리적 경력개발 목표·실천계획 수립하기 등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련 내용 총집합 (참여학습)
	면접기술 습득하기 I	면접기술 관련 총집합 (참여중심 진행)
	면접기술 습득하기 II	실전 모의면접
	취업전략 세우기	셀프마케팅,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다양한 방법 익히기 (구직망 구축, 사전탐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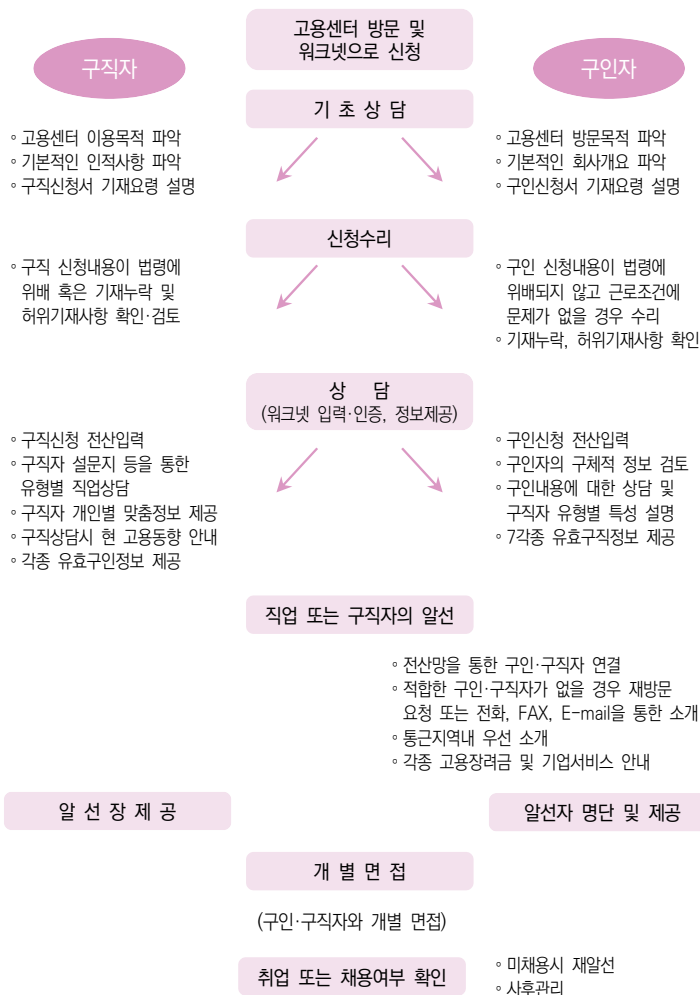
- (취업특강) 실습·체험형 교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2시간 강의식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구분	강의명	내 용
구직 기술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성공적인 취업준비 전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면접의 중요성, 면접의 종류, 면접준비 전략, 면접최종 점검 등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고용시장 동향, 효과적인 취업·직업정보 수집방법, 허위 구인 광고 대처 등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특강	여성, 주부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고령자를 위한 취업특강	고령자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기타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직업심리검사 절차·방법, 직업탐색·선택에 도움이 되는 검사 등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이해, 임금·근로시간, 부당해고·구제 등
	자녀진로지도	부모 돌아보기,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진로지도 포인트 등

-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과유예자) 중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중규모 그룹(30명 내외)을 구성하여 1.5시간 강의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내일을 위한 나의 일	• 일에 대한 태도 점검 및 일의 긍정적 의미 확인
내일을 위한 생애설계	• 심리적 지지 가능한 자원 안내 • 탈수급 후 제도적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내일을 위한 나의 경력	• 더 나은 일자리 이동 사례 탐색 및 경력설계 지원
내일을 위한 일자리정보	• 채용정보 탐색방법 등 취업성공전략 탐색
건강한 대인관계	• 대인관계의 중요성,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한 대화기법 등
긍정적인 자아	• 자존감 검사 및 긍정적인 자아 형성 지원
새로운 도약	• 취·창업 성공사례(탈수급) 탐색,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 안내
성공적인 구직활동	• 구직활동 이해, 이력서 작성 및 면접전략 습득 지원

고용센터 구인·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흐름도



50 취약계층취업촉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job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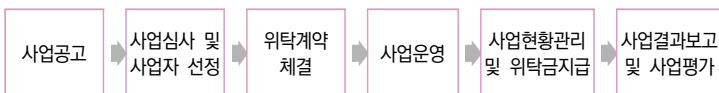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취업촉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의지를 향상시키고 구직기술 습득을 도와 구직자의 취업가능성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저소득자,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및 일반 구직자
-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채용박람회 등 채용행사,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제공

■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사 업 내 용	수탁(대상)기관	비고
채용행사 위탁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채용박람회 등을 운영하도록 위탁하여 구직자에게는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업체에는 인재 채용을 지원	행사개최 능력을 갖춘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민간기관의 심리상담사가 고용센터에 상주하여 실직·구직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사업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CAP@·취업희망 등)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사업자	

5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 사업목적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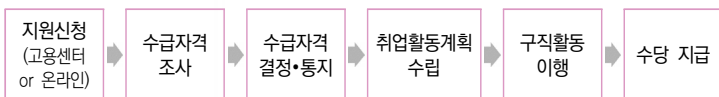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		×
Ⅱ 유 형	특정계층		15~69세	×	×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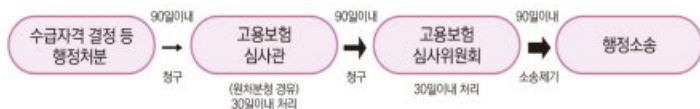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I 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50%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
II 유형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6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최대 195.4만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

■ 사업추진체계



■ 고용보험 심사제도

- 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 심사처리절차



07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52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사업목적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예외)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 규모)

②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③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④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⑤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한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채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지원요건)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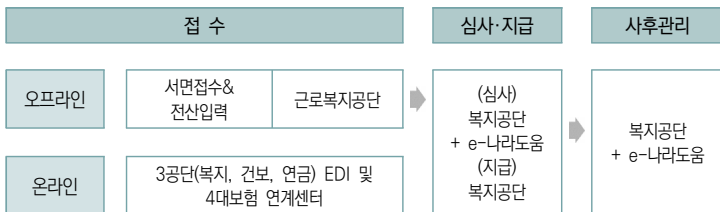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사업추진체계



53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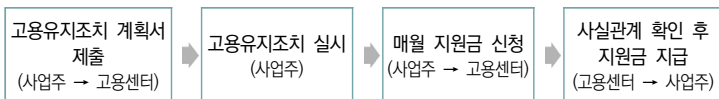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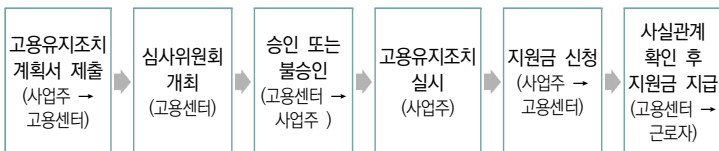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 사업추진체계

•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54 고용창출장려금(총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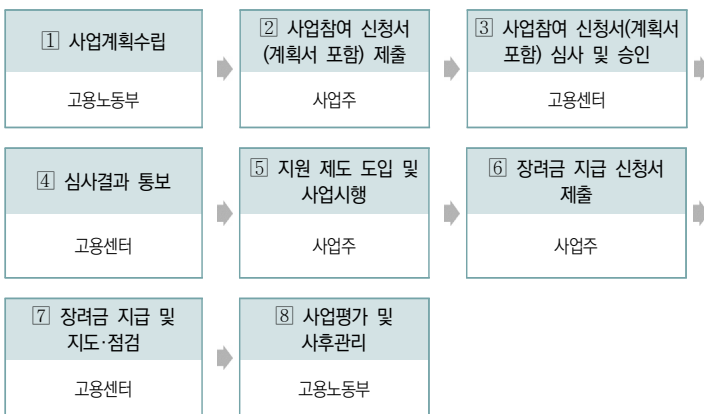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종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사업내용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① 교대제 도입·확대, ② 실근로시간단축제, ③ 주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③ 은 '22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10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1인당 20명까지)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인건비]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총 2년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th>3개월 단위</th><th>연간총액</th></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td>180만원</td><td>720만원</td></tr> <tr> <td>중견</td><td>90만원</td><td>360만원</td></tr> </tbody> </table>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② 신종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여 ③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④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th>3개월 단위</th><th>연간총액</th></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td>240만원</td><td>960만원</td></tr> <tr> <td>중견</td><td>120만원</td><td>480만원</td></tr> </tbody> </table>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	120만원	480만원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	120만원	480만원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지원 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액 미만 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table> <tr> <th>구 분</th><th>6개월 단위</th><th>연간총액</th></tr> <tr> <td>우선지원</td><td>360만원</td><td>720만원</td></tr> <tr> <td>대규모</td><td>180만원</td><td>360만원</td></tr> </table>	구 분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구 분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 사업추진체계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55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 개요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주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요건

-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22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 ②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③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지원 내용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①		조기단축기업②	노선버스업종③
			1명 당, 1개월, 지원금액, 지원기간	
500명 초과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60만원, 1년
300~500명	제조업	80만원, 2년		
	기타업종	60만원,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제조업 및 특례제의 업종은 최소 2년, 기타 업종은 최소 1년)	80만원, 1년
	기타업종	80만원, 1년		

- (임금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 1~2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①		조기단축기업 ^②	노선버스업종 ^③
	지원기간			
500명 초과	-			2년
300~500명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기타업종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 기타업종은 최소 1년	
	기타업종	1년		

① 개정 근로기준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② 조기단축기업이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③ 노선버스업종이 조기단축할 경우 조기단축기업의 예에 따라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 제 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 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임금보전은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56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사업목적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I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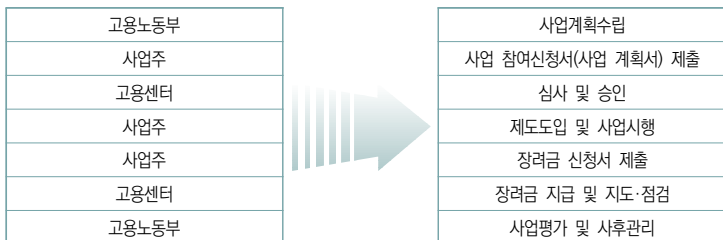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총 2년간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 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추진체계



57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
 -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
 - 2018년 55개 직무에서 2022년 245개 직무로 확대 (통합수정)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① 신청서를 제출·승인받은 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 * 단, 신청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승인 후 소급 지원 가능
 - ②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③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 ④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⑤ 무기계약 체결*
 -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 기업	120만원	48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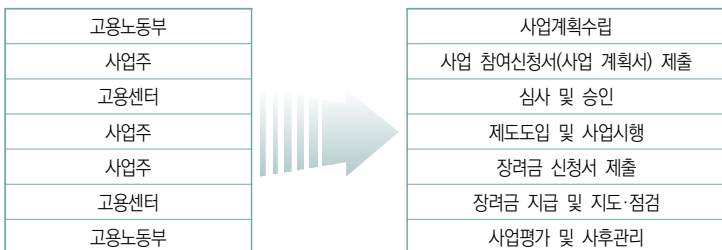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추진체계



58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 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17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사업추진체계



59

고용안정장려금(총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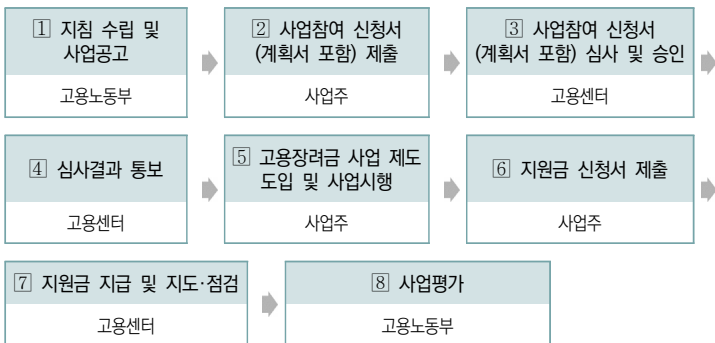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I 사업내용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 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 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한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①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② 재택·원격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간접노무비]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②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임금증가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임금증가 보전금은 임금증가액이 월 20 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출산의아기 고용장려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세번째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대체인력인건비] 월 80만원 (단,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 사업추진체계



60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I 사업목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 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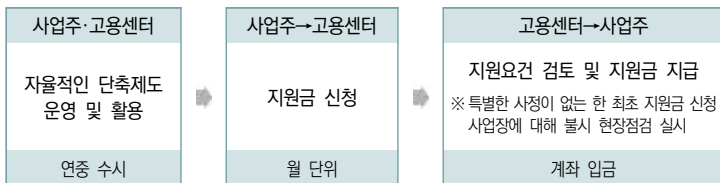
I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⑤ 근로시간 초과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 이하 * 근로시간 초과일: 출퇴근 기록상 출근(퇴근) 시각에서 각 15분 범위를 초과한 날 ※ (단축 전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별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추진체계



6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사업목적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도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자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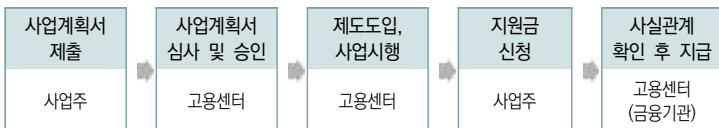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
(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및 재택근무부문 50%

■ 사업추진체계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용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 간소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 쉼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 생활 지원 등)

62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사업목적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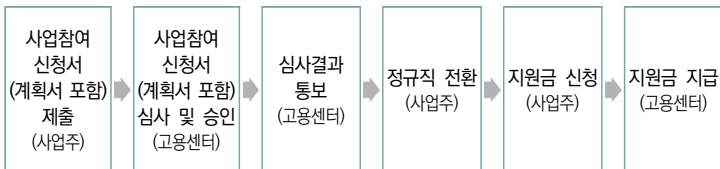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 (제한)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원

■ 사업추진체계



6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목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특례* 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120만원)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64 사회적기업 육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 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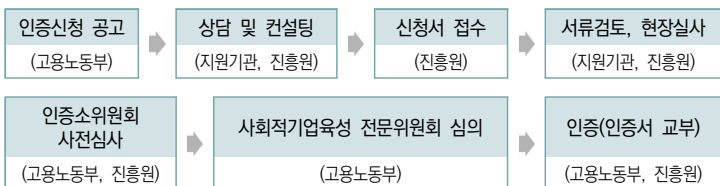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 규정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종합계획 수립 등)	고용노동부 (종합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각 부처 (지정 공모 및 심사·지정)
기초자치단체 (신청접수, 관리)	지원기관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고용노동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고용노동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22년 지원단가 1인당 월 2,107,260원 × 지원율’) * 예비 50% / 인증 40% + 20% 추가(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192,820원, 4년 한도)
사업개발비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판로개척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금융지원	사회적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등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세제지원	①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2천만원) ②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③내국법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처리

65 사회적기업가 육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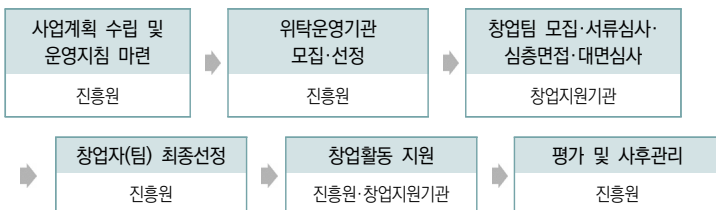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 및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 (지원내용) 창업공간, 창업비용*, 창업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자원연계 및 후속지원 등
 - * 창업팀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팀당 7백만원~5천만원)
- (지원방식)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위탁운영기관을 선정, 상시적·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6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0),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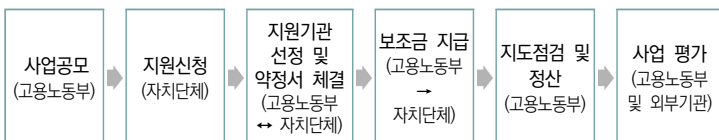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자치단체

■ 사업내용

- 지역혁신프로젝트
 -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광역자치단체)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응하여 조선업 희망센터(울산, 거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군산) 운영 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67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2.1월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4.5~'22.12.31)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지정기간: '18.5.4~'22.12.31) ▲목포시·영암군(묶어서 하나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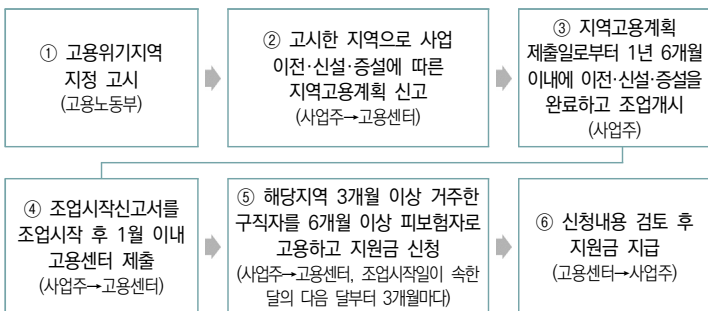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정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1일 상한액은 6.6만원)

■ 추진체계



6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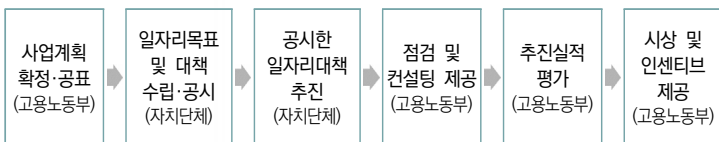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 제공

■ 사업내용

- (공시주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 *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종합계획(4년)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 (공시방법) 자치단체는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 공시한 자료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도 게시하여 공유
- (평가 및 인센티브)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 * 정부시상, 담당공무원 표창, 지역일자리사업 사업비 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69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 지정기준

유형	요 건
1유형	▶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4.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2유형	▶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4.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5.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유형	▶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절차

- 자치단체 신청 → 현지조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 지정기간

-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 지원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 필요)
-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70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 지정기준:

-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요건① 충족기준 〉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위 4가지 기준 중 2개 이하로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절차

- 업종별 단체 등이 신청 → 현장실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지정기간

-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71 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정책 고용영향평가

- (대상)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 (절차) 대상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실시(고용영향평가센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협의(고용노동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노동부)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 (대상) 모든 일자리사업, 100억원 이상 SOC사업, 인력양성 등 일자리 사업유형으로 구분한 R&D사업 등
- (내용) 해당 사업의 10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 사전 분석
- (활용)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의 보조지표로 활용
-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고용노동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각 부처, 고용영향평가센터) → 예산편성시 활용(기재부 등)

72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3),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제 전용 홈페이지(<http://www.work.go.kr/gongsi>)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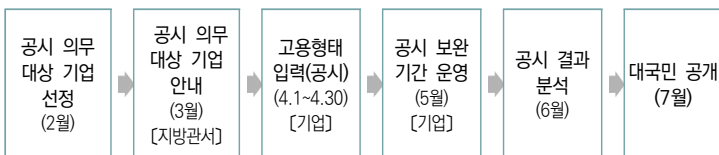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고용현황 공시

■ 사업내용

-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내용
 - 공시대상 고용형태: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 〈1〉 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②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 ③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2〉 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 공시범위 확대: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 공시의무를 공시 대상 300인 이상 전 사업주에게 확대('22년부터 시행 예정)
- 공시방법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워크넷에 공시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 하여 입력(공시)
 - * 국민들이 워크넷에서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조치
- 공시기간
 - 당해연도 공시결과 및 분석 내용은 매년 7월 대국민 공개
 - * 워크넷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

■ 사업추진체계



73

고용노동 통계 조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44),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I 목적

- 사업체의 고용노동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제공함으로써 기업·국민·정부 등 통계 수요자의 고용노동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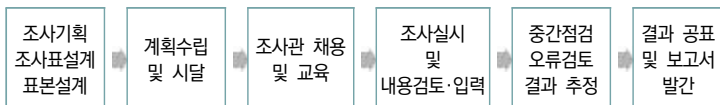
I 사업내용

고용노동통계조사 현황

조사명	조사 기준기간	조사대상	조사 주기	조사항목
사업체노동력 조사	• (고용) 매월 – 마지막영업일 • (근로실태) 매월 – 급여계산기간	• (고용) 종사자 1인 이상 50천개 사업체 • (근로실태) 상용 1인 이상 13천개 사업체	월 1회	• (고용) 시도별 사업체 종사자수, 노동 이동(입·이직), 빈 일자리수 등 조사 • (근로실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조사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	4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연 1회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체계, 정년제, 임금피크제조사	6월말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연 1회	기본급 체계(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등), 임금피크제 등 도입 현황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 10월	종사자 1인 이상 72천개 사업체	연 2회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구인·채용·미충원·부족·채용계확인원 조사
지역별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 10월 (마지막영업일)	종사자 1인 이상 200천개 사업체	연 2회	시·군·구별 사업체 종사자수, 노동이동(입·이직), 빈 일자리수 조사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6월 급여 계산기간	근로자 1인 이상(특고 포함) 33천개 사업체	연 1회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및 직종에 따른 근로실태(임금, 근로시간, 보험 등)조사
사업체기간제 근로자현황조사	6월, 12월	근로자 5인 이상 10천개 사업체	연 2회	기간제근로자 수 및 기간제법 적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회계연도	상용 10인 이상 3.5천개 기업체	연 1회	기업체의 직·간접 노동비용 • 직접: 임금(장액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 간접: 법정(외)복리비용 등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매년 12.31.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공무원 재직기관,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을 제외하고 가공·집계(사업체 및 종사자수))		

* 이상의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체 대상 조사(가구조사 및 산하기관 조사 제외)

사업추진체계



74 인력수급전망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87)

■ 사업목적

-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여 인력 구조변화 파악
 -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구직자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
 - 중장기적으로는 재학생의 직업진로 선택과 대학·학과의 정원 조정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사업내용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 변화를 전망하며, 크게는 공급전망, 수요전망을 실시
 - * 중장기 인력수급 총량 전망은 격년으로 수정 전망과 번갈아 실시하고,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은 시도별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실시
- 세부 산업·직업 테마 전망
 -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세부 산업·직업을 선정하여 이들의 인력수요 등을 심층 분석
 - * '21년 산업·직업 테마 전망 주제: ① 행정자료를 이용한 고용서비스정책 효과분석 ② 특수 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③ DW 행정 자료를 활용한 임금 분포 및 격차 분석, ④ 청년층 인력수급 및 노동시장 분석, ⑤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시장 특성 및 전망

■ 사업추진체계



08

튼튼한
고용안전망 확충

75 고용보험제도

목 적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

-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공무원 등
-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보수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 적용직종: ('21.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사업체제

● 근로자

구분	내 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1.6	사업주 0.80 근로자 0.80
	유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업계층 고용촉진 지원	·150인 미만: 0.25	사업주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	

※ 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를 1.8%적용(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9% 부담)

● 예술인·노무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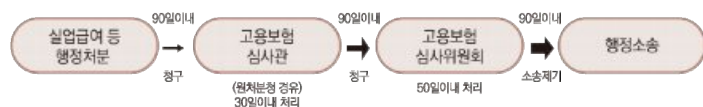
구분	내 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1.4	사업주 0.70 종사자 0.70
	유형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 22년 7월부터 보험료를 1.6%적용(사업주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각 0.8% 균등부담)

■ 고용보험 심사제도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 심사처리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재심사는 30일 이내 처리

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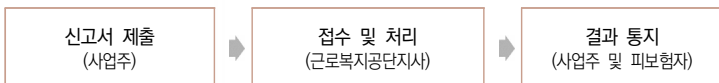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 사업내용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이하 '관할')에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이하 '관할')에 '상실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이하 '관할')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 부과
 - 미신고는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는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77 구직급여·연장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사업 목적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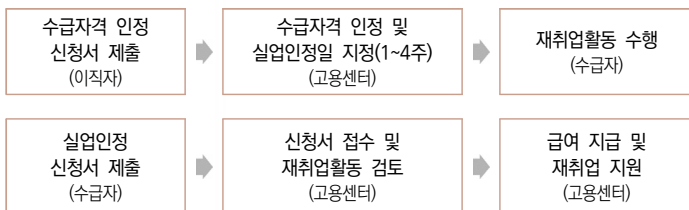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 ▶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 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 ▶ 특별연장: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78 취업촉진수당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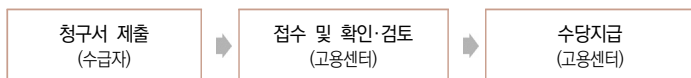
■ 사업 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 사업 내용

구 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 수 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 활동 비	직업안전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이 주 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는 실비 + 7.5톤까지는 실비의 50% 지급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7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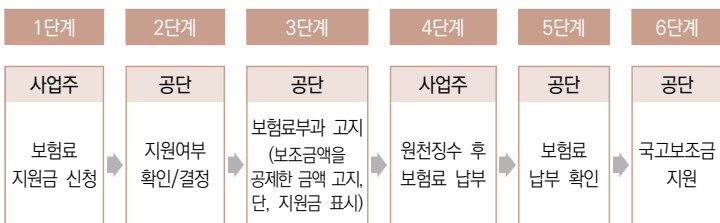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 보험료 지원 절차



8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사업목적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사업내용

-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및 만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 제외
-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182만원~338만원)의 2.25%(월 40,950원~76,050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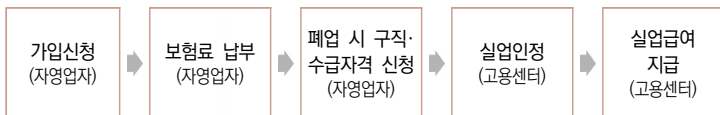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기준보수의 60% 지급
- * 지급수준: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일부터 5년 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81 실업크레딧 지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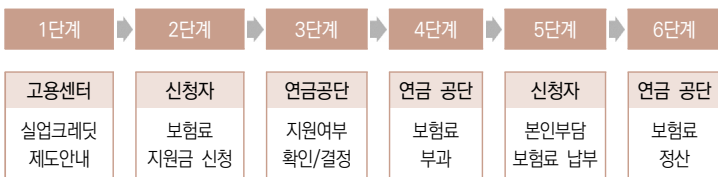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82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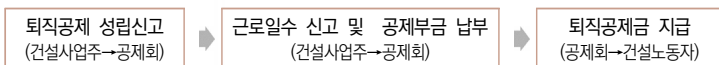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 사업내용

- 가입대상
 -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노동자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 (퇴직공제 성립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 신고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 처리” 메뉴 →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 ↳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공사예정금액 기준 '20.11.27.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 '22.7.1.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https://ecard.cwma.or.kr>) 이용
 - *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 적립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사업 추진 체계(지원절차)



83

건설일용노동자 기능향상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사업목적

- 건설업 공급부족 직종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빈번한 입·이직 특성과 직종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기능훈련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도모

■ 사업내용

- (개요) 민간 훈련기관 위탁을 통해 건설근로자 기능훈련 실시
- (참여대상) 만 15세 이상인 자 중 ①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된 자, ② 퇴직공제 근로내역 적립자,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④ 직업안전기관에 건설 직종으로 구직 등록 중인 자 등
- 지원내용
 - 훈련기관에 훈련비 32천원(훈련생 1인당 1일 기준) 지원
 -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16천원(1일 기준) 지급
- (사업공모) 매년 11~12월 정기공모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 * (훈련기관 요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훈련과정) 1일 완성형(20일 모듈식) 훈련과정으로 기본·심화과정, 주간·야간 과정으로 편성·운영
 - * 훈련직종(12개): 조적, 미장, 타일, 방수, 배관, 도장, 건축목공(일반·형틀·한옥), 철근, 용접(일반·플랜트), 비계, 콘크리트, 석공

■ 사업 추진 체계(지원절차)



84 건설노동자 취업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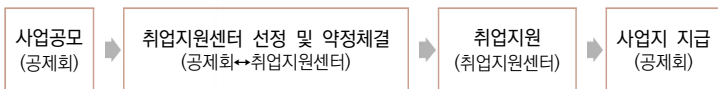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건설근로자에 대한 공공 무료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소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

■ 사업내용

- (개요) 민간 취업기관 위탁을 통해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실시
- (참여대상) 건설업종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공모에 선정된 취업지원센터에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 * 2022년 전국 17개소 운영
- (사업공모) 매년 11~12월 정기공모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취업지원센터 선정
 - * (위탁기관 요건)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사업 추진 체계(지원절차)



85 산재보험제도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개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 적용범위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무급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고를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종류		61	61	61	62	60	58	58	58	58	51	45	35	28	28
업종별 요율	평균	19.5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16.5	15.0	14.3	14.3
	최고	553	360	360	354	354	340	340	340	340	323	281	225	185	185
	최저	7	7	6	6	6	6	6	7	7	7	7	6	6	6
출퇴근요율		-	-	-	-	-	-	-	-	-	-	1.5	1.5	1.3	1.0

-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 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86 산재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목적

-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 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 급여 종류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노동자에게 지급
 - * 최고보상기준: 1일 232,664원의 70%, 최저임금(1일 73,28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유족급여)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시 유족에게 지급
 -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 상시간병급여: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수시간병급여: 29,840원(전문) 27,450원(일반)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 상병보상연금: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례비)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6,775,750원, 최저금액 12,082,820원
 - * 선지급(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은 최저금액 지급 후 추후정산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애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기타 훈련은 600만원/연)
 -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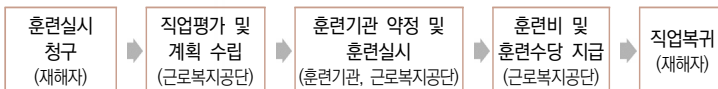
- (요양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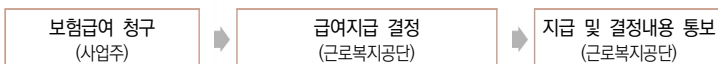
- (산재보험 급여청구)



- (직업재활급여: 훈련)



-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09

직업능력개발 지원

■ 사업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사업내용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 사업추진체계



87-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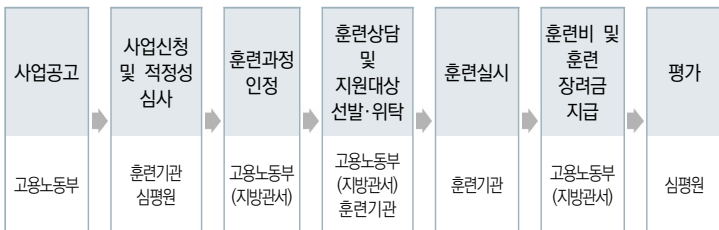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훈련기관: 훈련비 전액
 - 훈련생: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사업추진체계



87-2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 사업목적

-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

■ 사업내용

- (지원과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일반고 특화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고3학생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 사업추진체계



* 단, 일반고 특화훈련은 사업공고 이전에 교육청을 통해 학생 수요조사 실시 →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

87-3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훈련방법을 가진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핵심 실무인재' 양성('21~'25년까지 20만명)

* 멧쟁이사자처럼, 엘리스, 네이버, 멀티캠퍼스, 모두의 연구소 등

- 기업이 문제를 제시하고 훈련생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춰 훈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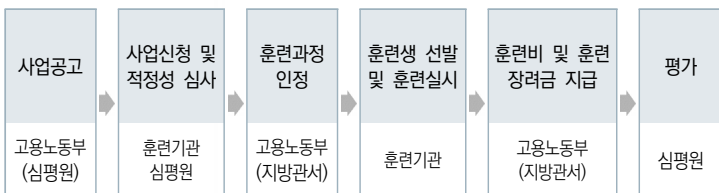
- (지원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K-Digital Training 심사를 거쳐 선정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지원, 일정 요건* 충족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만원) 및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등

■ 사업추진체계



87-4 K-Digital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 (www.hrd.go.kr)

■ 사업목적

- 청년, 중장년 구직자 등 취약계층이 디지털 역량 부족(Digital Divide)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지원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K-Digital 기초역량훈련 (K-Digital Credit) 훈련과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 원격훈련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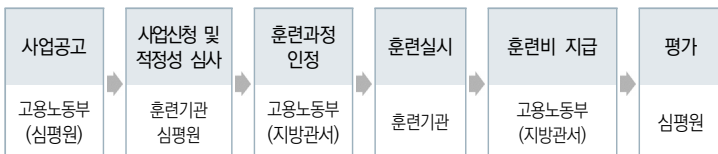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분야)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데이터 분석, 스마트기술, 신기술 이용 등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 등
-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50만원(지급 후 1년 한도) 추가 지급

* 추가 지급된 50만원은 정해진 「K-Digital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훈련과정」 수강에만 사용 가능하며, 훈련생 개인은 훈련비의 10%를 부담해야 함(수료시 환급)

■ 사업추진체계



8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I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의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I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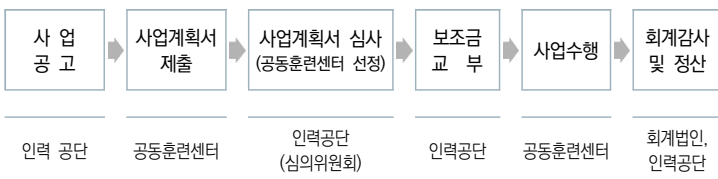
- (사업내용)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 시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에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인프라 및 운영비를 6년간 지원(이후 공동훈련센터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반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전라분야 훈련과정운영비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 에 지원

- (유형) 컨소시엄 유형은 대중소 상생형, 전략분야 인력양성 등으로 구분

유형	주요내용
대중소상생형 (72개)	• 대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가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기업(기업·사업주단체 등)의 훈련시설을 공동훈련센터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전략분야 인력양성 (70개)	•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공공기관 등)를 지원

■ 사업추진체계



88-1 K-Digital Platform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사업목적

- 지역 내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중소기업 재직자·구직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 제공 및 시설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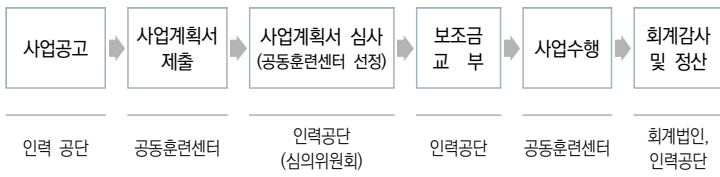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단체,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인프라 비용은 1년차 10억, 2년차~5년차까지 1년에 최대 5억씩, 5년간 총 30억 지원

* 훈련비용은 훈련인원 등 각 훈련사업 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구 분	예산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인프라 운영비용	K-Digital Platform		플랫폼 운영·인프라 구축비 - 시설 임차 및 공간 조성비, 장비 구축비 - 운영비(일반운영비, 인건비) - 디지털확산지원비	10억 한도 * 5년간 30억
훈련비용	택1 이상 필수	K-Digital Training (구직자 과정)	훈련 과정 운영비 - 훈련비단가 130% 또는 스마트훈련 단가 * 디지털 선도기업 카데미는 별도 단가	시간당 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원
		K-Digital Credit (구직자 과정)	훈련 과정 운영비(1인당 정부지원금) - 훈련기관이 설정한 시장가격 인정, 50만원 한도 내	
	선택 사항	내일배움카드, 사업주 훈련 등	각 사업별 훈련과정 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사업추진체계



8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1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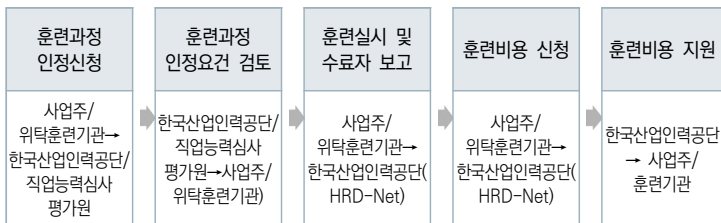
-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훈련비	• 4시간 이상 훈련(집체, 인터넷원격) -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 휴가 훈련 인건비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 - 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	•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 수당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만원 한도)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훈련과정 접수: ① 자체훈련-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위탁훈련 및 원격훈련-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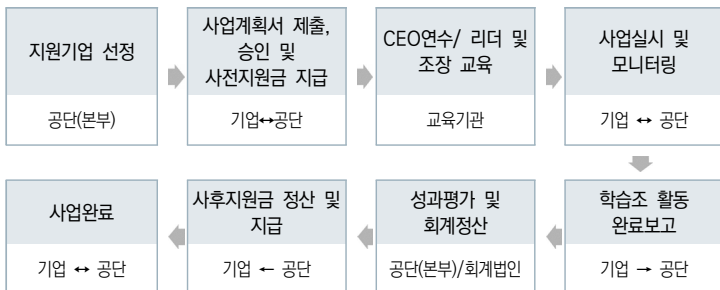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오랜 경험과 고속연기술을 보유한 산업 현장교수를 활용하여 기술전수·기업자문(HRD 등)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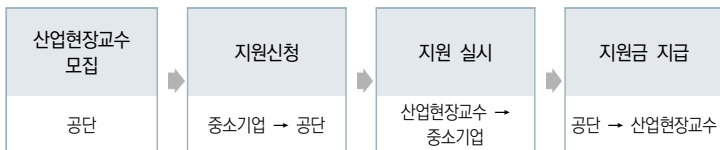
구 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학습조직화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지원유형(학습조직운영, 우수 사례활동, 외부전문가, 학습 인프라지원)에 따라 비용의 70% 선지급 후 평가에 따라 30% 후지급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단, 기업인적자원개발분야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업 기술전수 및 컨설팅 지원

■ 사업추진체계

• 학습조직화지원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91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052-714-8711), NCS 공식 홈페이지(www.ncs.go.kr)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

■ 사업개요

- '13년부터 고용노동부 총괄,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 24대 분야 1,039개 NCS 개발·고시('21.5.27.)

* 매년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10여개 NCS 신규 개발

NCS 24대 분야(대분류)

0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3. 금융·보험	04. 교육·자연·사회과학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 보건·의료	07. 사회복지·종교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9. 운전·운송	10. 영업판매	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료
17. 화학	18.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3. 환경·에너지·안전	24. 농림어업

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예시

- 각 NCS에서는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NCS의 내용(예시) 〉

직무 (NCS)	능력 (능력단위)	세부능력 (능력단위요소)	수 행 준 거 ※ 일부 내용만 발췌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하드웨어 부품 선정	부품의 특성 분석하기	•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동작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지 식】 • 전자부품에 대한 기본 지식 • 부품사양서 【기 술】 • 계측장비 사용 능력 • 부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능력 【태도】 • 부품의 소재 및 재질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 • 정확한 부품 평가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부품의 검사항목 결정하기	
		부품 선정하기 ⋮	
	하드웨어 회로 구현설계 ⋮		

⇒ (인력공급)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하고, (인력수요)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에 준거로 활용

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추진현황

- NCS 현장성 제고
 - 기 개발된 NCS(1,039개)를 검증·보완해 고시('21.5.27), '22년 NCS 11개 추가개발하여 현장기술변화 반영

* '22년 전기자동차정비, 수소공급, 리튬이온전지제조 등 11개 개발

● 현장형 인재육성

- 교육,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여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

* 교육: ('18) 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학년부터 전면 개편

훈련: ('15) 초 공공훈련 + ('16) 초 민간훈련(3.62만여개) 과정 개편

자격: 자격의 현장성 및 NCS와의 연계성 확대를 위해 NCS와 자격 간 대상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NCS를 기반으로 자격의 분할·통합 등 개편 추진

NCS 기반 자격 개편 사례

개선	패션디자인산업기사는 패션트렌드 분석 및 샘플패턴 제작, 시제품 개발 등으로 시험과목을 변경하여 실무에서 활용되는 내용으로 평가내용 개선
분할	화공기사 자격을 산업현장직무를 반영하여 화공기사는 석유화학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정밀화학기사를 신설하여 두 종목으로 분할
통합	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는 NCS 능력단위로 보면 자격 내용이 유사하고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자격활용도가 낮아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

- 자격-교육-훈련-경력 간의 상호 호환이 가능한 역량체계(SQF)* 설계, 활용 우수사례 발굴

* 산업별 직무역량체계: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 특수용접기능사, 컨벤션기획사 등 178개 자격종목에 대해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 운영

92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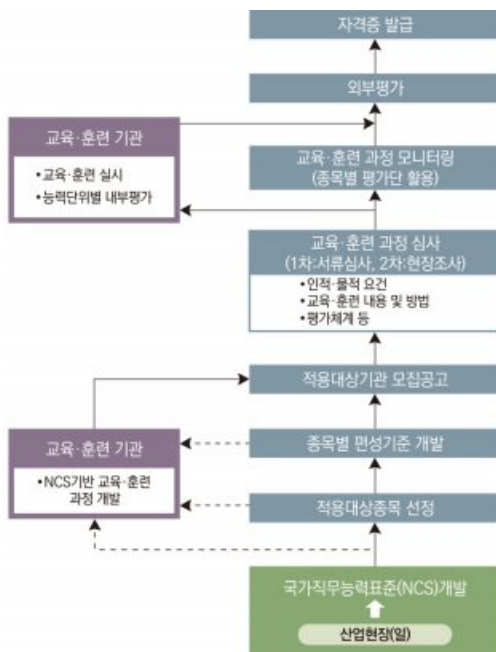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CQ-Net 홈페이지(<https://c.q-net.or.kr>)

■ 개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 추진절차



■ 사업추진체계

주요절차	세 부 내 용	비고
① 대상종목 선정	• 매년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②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	• 선정된 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 기반 교육·훈련 과정 내용(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최소 교육시간), 평가방법, 시험문제 유형 개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③ 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 구성·운영	• 적용대상 종목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NCS 개발 전문가, 시험위원, ISC 추천 전문가 등)	인력공단
④ 시행계획 수립	•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 교육·훈련과정 수, 평가의 난이도, 평가일정 등 공고	고용노동부
⑤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편성	•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훈련기관
⑥ 교육·훈련기관(과정)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⑦ 외부평가 문제출제	• NCS 능력단위 중심의 산업계 주도 외부평가 시험 문제 출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⑧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 (이수기준) 75%이상 출석, 내부평가 60점이상	교육·훈련기관
⑨ 교육·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	• NCS 기반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분기 1회 이상) - 지정받은 내용으로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 -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⑩ 외부평가	•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 실시 - 지원단에서 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 중심의 평가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⑪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 자격증에 교육·훈련을 받은 NCS 능력단위 등 명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9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644-5113)

관련 홈페이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 HRD-Net(www.hrd.go.kr)

■ 사업목적

-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일원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로 하고, 인증평가*와 과정심사**를 동시에 실시
 -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평가하여 정부지원훈련에 대한 참여자격 부여
 -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

■ 심사평가 신청대상 구분

- 기관평가: 집체훈련기관*, 원격훈련기관**
 - * 집체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일반고·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 원격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과정심사: 집체훈련과정*
 -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 일반고·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원격훈련은 별도 심사계획 공고

■ 심사평가 요소

- 기관평가: 기관건전성(준법성(행정처분), 재정건전성) 및 훈련역량*
 - * 훈련성과(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이수자평가 등), 현장평가(인프라, 과정 개발 등)
- 과정심사: 기본요건, 과정적정성(훈련내용, 교·강사, 시설·장비 등), 성과적정성* 및 산업·지역별 인력수요 적정성**
 - * 실업자 일반계좌제훈련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심사평가 결과 및 활용

- 기관평가: 훈련기관마다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부여 및 HRD-Net 공개
* 신규기관은 1년인증, 우수훈련기관은 5년인증
- 과정심사: 훈련과정 선정 제외(인증유예 등급 훈련기관 포함)

■ 추진일정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21.11월) → 훈련기관 설명회('22.3월) → 신청·접수(5월초) → 기관건전성평가(~5월) → 훈련역량 및 과정심사(~9월) → 결과 통보(10.21) → 이의신청 심의·확정(11월말)

9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비정규직노동자, 전직실업자 등)이 직업훈련 시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의 연간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월 최대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 사업추진체계



95 숙련기술 장려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 사업목적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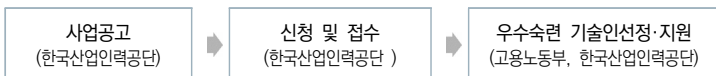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및 홍보

구 분	인원 (년)	선정대상	지원내용
대한민국 명장	30명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 일시장려금 20백만원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증서 및 명장패 등 수여 •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1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
우수 숙련기술자	100명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업무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 일시장려금 2백만원 • 증서 수여 •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2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
숙련기술 전수자	10명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 숙련기술전수지원금 지급 • 증서 수여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 업체 이내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 현판 수여 •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이달의 가능한국인	12명	• 직업계고 등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CEO로서 숙련기술 향상에 기여한 사람	• 증서, 휘장, 흉상패, 현판 등 수여

- 그 밖에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민간숙련기술인단체 및 숙련기술인 취업 등 지원

■ 사업추진체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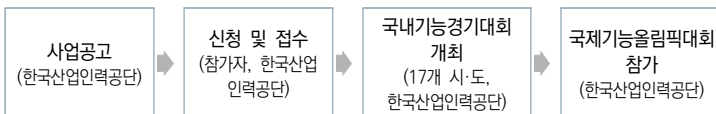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기능경기대회 저변 확대를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등을 통해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및 숙련기술 향상 도모

■ 사업추진체계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출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여 출전

10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96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노력

■ 사업내용

- 사업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1: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장 노동시간 진단 + 단축 방안 제시 + 정부지원 제도 안내 등)
 - (신청)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전문가 컨설팅 수행 기관(2월중 수행 기관 선정 예정) 등에 문의·신청

97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 02-6021-1222, 1167),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사업 개요

-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일터혁신이란?

⇒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는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

■ 사업내용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원내용) 사업장 희망 분야* 컨설팅 무료지원(10주~21주)

* (컨설팅 분야) ①노사파트너십 ②작업조직·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개선 ⑤평가체계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장년고용안정 ⑨안전한 일터 조성

※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 일부(30%)를 부담

- (신청·선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신청사이트(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장 선정('22년 2월~6월 중 상시접수·수시선정)

* '사업장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에 대해 종합심사

■ 컨설팅 진행 절차



■ 컨설팅 수행 내용

- (진단)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사업장 개선사항 확인
- (디자인팀 구성) 노사가 참여하는 디자인팀을 구성, 해결방안 마련
- (사업장 방문) 전문컨설턴트가 주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정부 타 지원사업 연계 지원, 종료 후 3개월간 이행 관리

98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사업목적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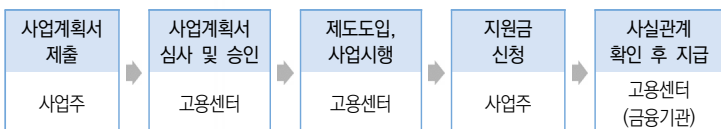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
(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및 재택근무부문 50%

■ 사업추진체계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용 문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 쉼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 생활 지원 등)

*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참여혜택)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고용장려금 사업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참여방법)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가능

9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1522-900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개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II 주요 내용 (제6장2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16조제1항)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제76조의3제7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 참고자료

- 사업장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12월)

100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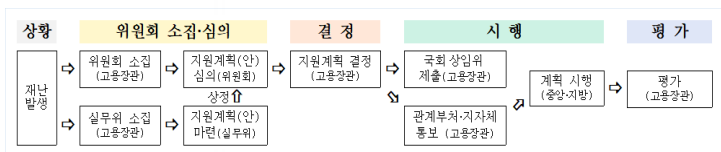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필수업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 신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

■ 사업내용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 (심의사항)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정,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구성) 고용노동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협의회·노사단체 추천인사 및 관련 전문가 등
- 실태조사 : 재난 유형별 필수적인 업무 현황, 종사자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
-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 보호·지원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행 등 평가 실시
-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101 근로자 파견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의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파견 대상 업무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2개)
 -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직접고용의무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아울러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행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32개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 업무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업무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카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하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 기사 업무 제외
252	정규교육외의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 제외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 제외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참고 근로유형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제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 】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 ☞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 도급 근로자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근로자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임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사용 종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용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자
 -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보험모집인, 레미콘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 ※ 기타 화물차 자차기사, 간병인,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쉐어서비스 기사 등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논의되고 있음

10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Ⅰ 개 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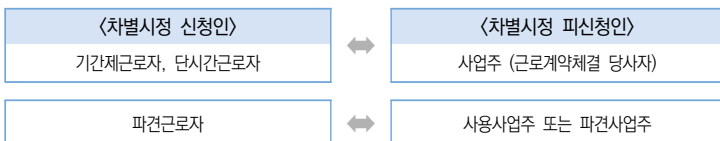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요구를 통해 차별적 처우 시정

Ⅱ 신청방법

-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 (시정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시정요구)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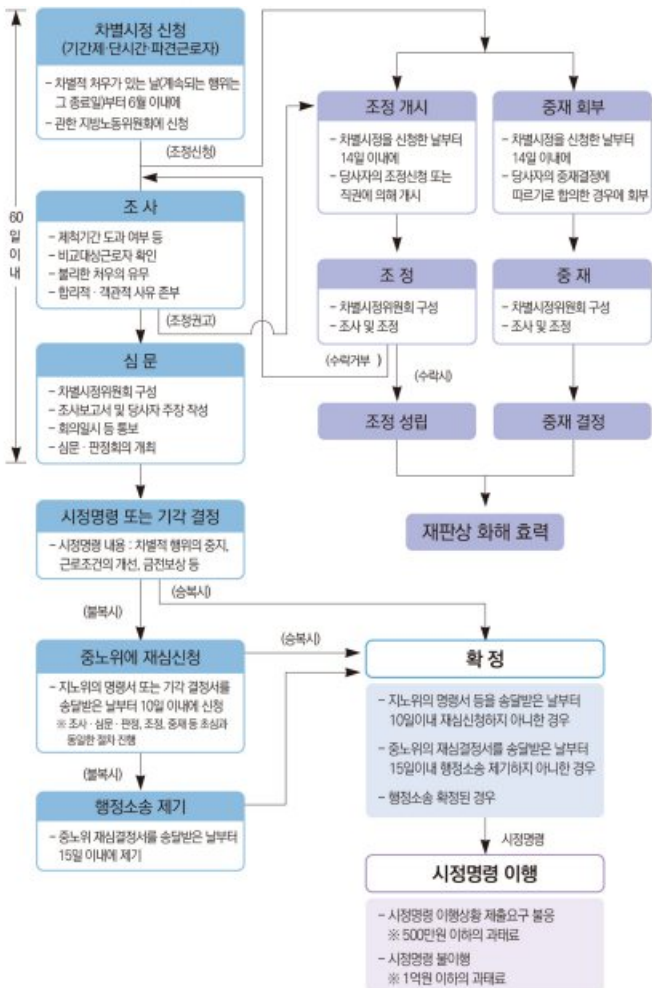


Ⅲ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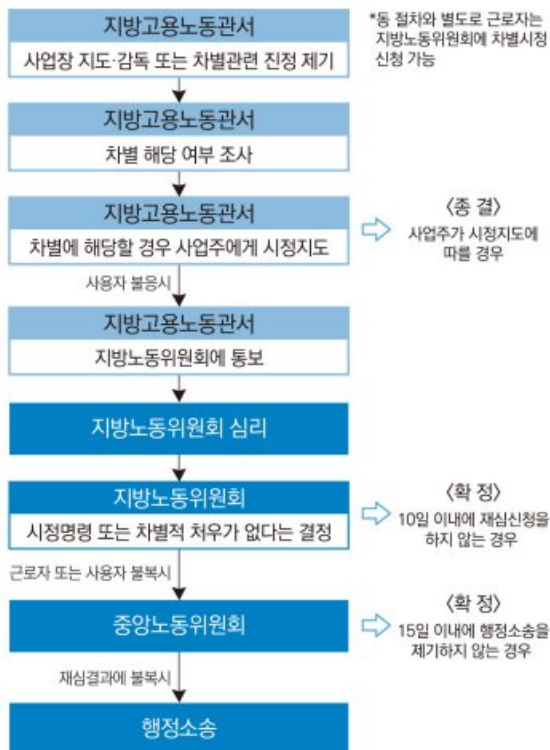
-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 근로감독관을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



103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노사발전재단(☎ 02-6021-1230),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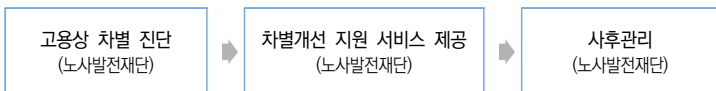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 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캠페인

■ 사업추진체계



104 최저임금보장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개요

-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I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수습 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I 결정방법

-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급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인상률	2.75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2.87	1.5	5.05

Ⅰ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¹⁾의 10%(‘22년 기준)²⁾에 해당하는 부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①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22년 기준)³⁾에 해당하는 부분, ②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1)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22년 시간급 최저 임금액: 9,160원(약 209시간 기준, 1,914,440원)

2)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비율	25%	20%	15%	10%	5%	0%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미산입 비율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비율	7%	5%	3%	2%	1%	0%

Ⅰ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10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Ⅰ 개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명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 ▲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내역

Ⅲ 교부 방법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자로 교부할 수 있음
 - 사내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것도 가능
- 임금명세서 법정 서식은 없고, 법령에서 정한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면 사업장에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임금명세서는 재직자 기준으로 정기임금지급일에 교부하여야 함
 -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교부하여야 함

■ 작성 방법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고정적인 기본급의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일급제나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수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기재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공제액을 기재

■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음(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30	50	100
·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	30	50

106 대지급금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도산 대지급금	〈지원 요건〉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 인정 신청일 등					
	〈지원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비교: 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임						

사업명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간이 대지급금	〈지원 요건〉 · 사업주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 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 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 범위〉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환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107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지급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작성 등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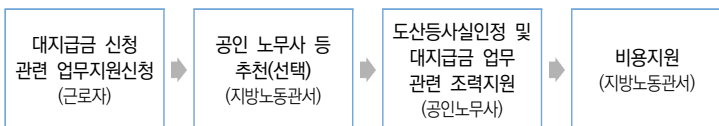
- 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비용 지원
- (지원대상)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 1명당 6만원(사업장당 한도 300만원)

■ 사업추진체계



108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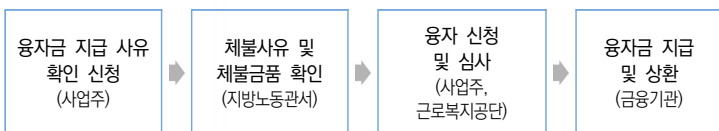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 지원내용(상한) :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원 상한
- 융자상환 :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담보) 2.2%, (신용보증) 3.7%

■ 사업추진체계



109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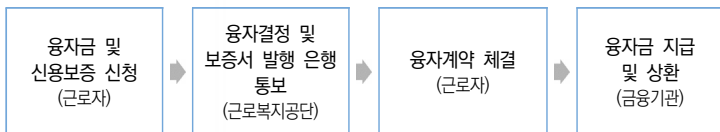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 이상이 체불
- 지원내용
 -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 융자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사업추진체계



110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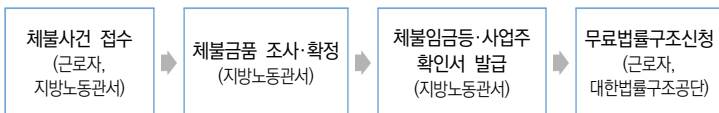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 사업추진체계



■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유채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111 퇴직연금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홈페이지(www.moel.go.kr/pension)

■ 개 요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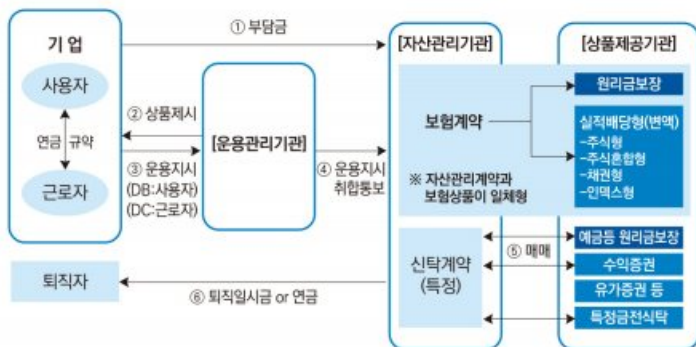
*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

- (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지급요건 등

-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 (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참고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 (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 (특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4.3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포함,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1.3.)

112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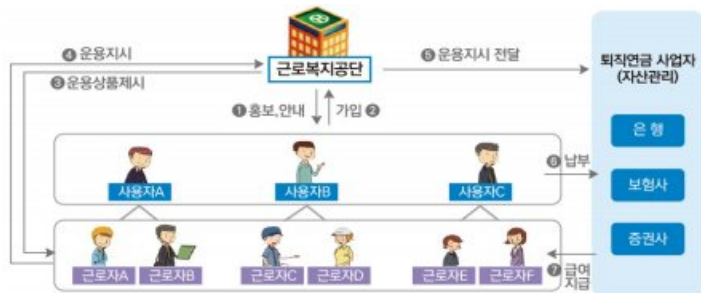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pension.koomwel.or.kr)

Ⅰ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교육

-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 (사업수행 주체) 외부 노·사 단체, 전문가 단체에 민간위탁
- (교육내용)
 - 도입지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개요, 도입 절차, 퇴직연금제도 규약 작성 등 교육
 - 운영지원: 퇴직연금제도 기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 적립금 운용 등 교육

Ⅱ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운영

-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노동자
- (사업내용) 제도설계, 규약작성·신고 지원, 가입자교육,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관리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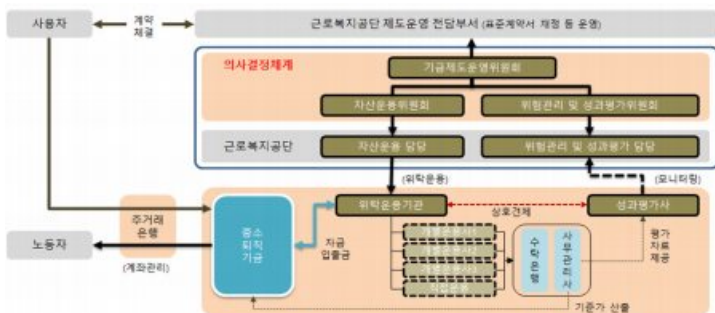
11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pension.koomwel.or.kr)

■ 개요

- (사업개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22.4.14. 시행)
- (사업대상)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 (제도설정)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 (부담금 수준 및 납입)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계정 납입 하여야 함
- (재정지원 및 수수료)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도입·정착되도록 재정지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 3년간 지원) 및 최저수준 수수료 책정(0.2% 예정)

[중소기업퇴직기금 체계도]



11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개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사업재원) ▲기금의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이고 일정금액(원청 노동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및 파견노동자에게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
- (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노동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세제혜택

- 사업주: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 노동자: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115 근로복지기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 사업목적

-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증진 도모

■ 지원 대상 및 수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근로복지 기금지원	■ 협력업체 노동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사내→공동기금지원으로 내역변경	■ 출연금액의 100%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신설)	■ 출연금액의 100%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사업추진체계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116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컨설팅 지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 사업목적

- 기업복지 컨설팅 제공으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사업대상)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가입한 기업회원
- (지원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컨설팅 무상제공

컨설팅유형		
기본	심화	도입
· 신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념과 필요성 설명 · 1기업 당 1회(2시간 이상)	· 기본컨설팅 연계 또는 기업이 별도 신청 시 제도에 대하여 사업장 진단(설명, 인터뷰),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제도설계, 운영방법 등 종합 컨설팅 · 1기업 당 1회(2시간 이상)	· 컨설팅을 통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기금 법인 설립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 지원 · 1기금법인 설립시 1회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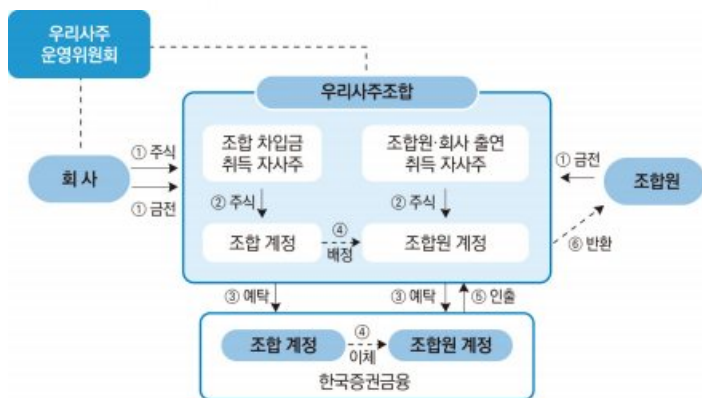
컨설팅	회원가입 ▶ 컨설팅 신청 ▶ 컨설턴트 배정 ▶ 컨설팅 진행 ▶ 만족도 평가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회원가입(기업)	① 컨설팅 유형 ② 컨설팅 분야 선택	컨설턴트가 연락 컨설팅 일정 협의	기본·심화·운영 컨설팅 실시 (회당 2시간)	컨설팅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117 **우리사주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 02-6908-8401)

개요

-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 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운영체계

취 득 방 법	배 정 방 법
• 조합원출연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회사·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세제혜택

-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조합원: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원)을 소득 공제 → 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
 - 과세이연: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 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75% 비과세
 - 6년 이상 보유: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해당)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118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 사업목적

- 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노동자
-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전문가 상담 무상제공

상담분야

직장	개인	가족
① 직무스트레스	⑦ 성격진단	⑬ 부부갈등
② 조직 내 소통능력	⑧ 스트레스관리	⑭ 자녀양육
③ 업무역량 강화	⑨ 정서문제	⑮ 기타
④ 불만고객응대	⑩ 건강관리	
⑤ 일가정양립	⑪ 대인관계	
⑥ 직장 내 괴롭힘	⑫ 자살	

상담방법 및 이용 가능횟수

구분			이용횟수	제공 시간	비고
개인	온라인	게시판	무제한	24시간 내 답변	근로복지넷
		카카오톡	1인당 7회 (고위험군 연장승인 후 추가 7회)	50분 이상	
		전화상담			
		영상상담			
	오프라인	근로자			장소 상호협의
기업	오프라인	사내	100인 미만: 5회 100~200인 미만: 10회 200~300인 미만: 15회	1인당 50분 이상	사업장 방문
		집단	3회	회당 60~90분	사업장 방문

■ 사업 추진절차

EAP	회원가입 상담신청 상담일정 협의 상담진행 만족도 평가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회원가입 (개인·기업)	① 상담유형 ② 상담분야 ③ 상담사 선택	상담사가 전화 연락 상담일정 협의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회당 50분)	상담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11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ldream.net)

■ 사업목적

-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채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융자대상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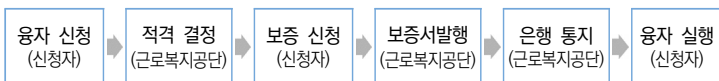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종 류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①의료비 ②훈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양생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2년 280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2년 196만원)
	⑧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2년 196만원)

구분	내 용	
	종 류	대상 및 조건
용자 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②훈례비	• 1,250만원
	④부모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용자 금리	• 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 임금체불생계비 용자 금리 한시 인하 1.5~1.0%(’21.1.21.~2.28. 접수자에 한함)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 (생활안정자금) 280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42만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용자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용자 한도	자녀 학자금	•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 1인당 1,000만원	• 1인당 2,000만원

■ 사업추진체계



120 코로나 피해 고용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ldrea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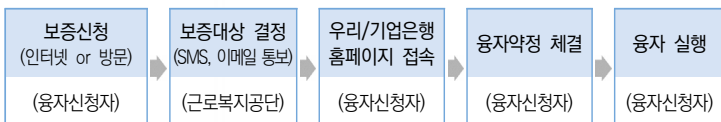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운수업 종사자,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계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22년 한시 시행)

-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한도 융자
- 융자조건: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융자 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7~1.0% 보증료 징수(융자금 지급 시 선공제)

■ 사업추진체계



121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ldream.net)

■ 사업목적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용자 등 보증대상 용자사업*의 용자 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신용보증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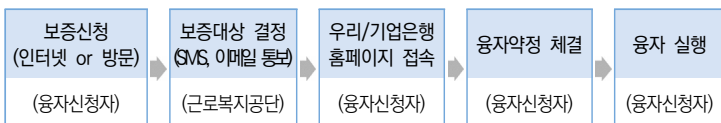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보험) 산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 신용보증지원 제외 대상 〉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와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내용: 각 용자사업 한도액으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지원

* 용자 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7~1.0% 보증료 징수(용자금 지급 시 선결제)

■ 사업추진체계



122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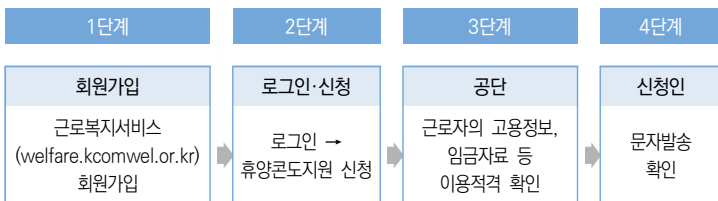
■ 사업목적

- 휴양콘도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 및 그 가족의 여가 욕구 충족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단, 평일에는 고용·산재가입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및 사내 동호회장, 부사장 신청 가능
- 신청시기 및 선발
 - (주말·성수기) 이용희망월 전월 10일까지 신청, 이용희망일 전월 15일에 선발
※ 월평균 소득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발
 - (평일) 이용희망일 7일전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선발

■ 휴양콘도 신청절차



보유콘도 현황

콘도명	구좌수	평 형	이 용 가 능 지 역
계	702구좌	-	
한 화	210구좌	26, 38평	설악, 양평,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튼), 지리산,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 노	150구좌	19, 26평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캔싱턴	155구좌	16, 21, 25, 26평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일 성	78구좌	15~28평	설악, 지리산, 부곡, 남한강, 제주, 경주, 무주
금 호	45구좌	17, 27평	설악, 통영, 화순, 제주
리 슝	32구좌	18, 24, 28평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구좌	17, 24평	무주, 도고, 제주, 지리산
금강산	11구좌	16, 27, 30평	고성, 제주

123 근로자 문화예술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ldream.net)

■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참가자격
 - 근로자(해외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근로자, 산재 근로자 및 실직일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 사업주(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산재가입 중소기업사업주, 가요·연극분야에 노동자와 함께 단체를 구성하는 사업주 포함)
 - * 기성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제외, 정부나 민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한 대회 최고상 수상자, 각 분야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 분야 참가 불가(타 분야 참가 가능)
- 참가 분야

가요	연극	미술	문학
독창 중창 합창	기성극 창작극 뮤지컬	회화, 서예(캘리그래피포함), 디자인, 공예, 사진(스마트폰 포함)	시, 소설(단편소설, 단편동화), 극작(희곡, 단편시나리오, 단편드라마), 수필

- 혜택: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 상장 및 상금

11

건강한 안심 일터 구성

124 업종별 재해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업종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여, 사망사고 및 중상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부상) 재해 감소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제조업 5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중심)
- 지원내용(안전보건공단 주관)
 -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사고사망자가 다발하는 핵심 고위험요인* 보유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기술지도(패트론헤런장점검 등),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전개
 - * 건설업 떨어짐, 제조업 끼임 등 사고사망자 다발요인 및 사회적 관심 사항
 -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위험 특성에 맞는 사고성재해 예방활동 지원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현장 모니터링
 - 재해가 다발하는 조선업 등 특수 업종, 산재취약계층(장년,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 전개 등
 - ▶ 법정 위탁사업
 - 화재·폭발위험 및 유해·위험물질 제조·취급설비를 보유한 화학공장 등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확인(산안법 제44조)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장과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3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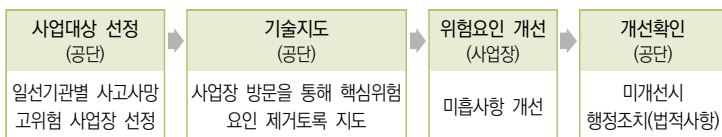
-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산안법 제42조)
- 종합건설업체(약 13,000개소) 및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사고 사망만인율 산정(산안법 제10조)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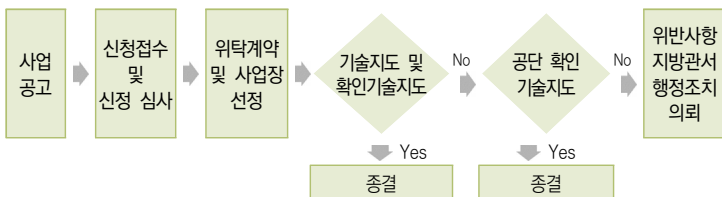
-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 및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구축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 개발 및 보급 등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위탁)



- 법정사업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125 유해·위험기계등 제조등록업체 자금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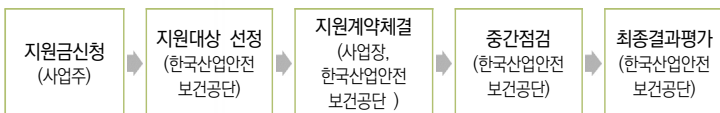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 또는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한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
 - 최근 2년간 인증취소 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또는 제품 수거·파기 사례가 없는 사업장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적합 판정 사업장
- (지원내용)
 -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보건 성능 향상을 위한 제품설계·연구개발 등의 비용
 -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60% 한도)지원
 - 제품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
 -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50% 한도)지원

■ 사업추진체계



126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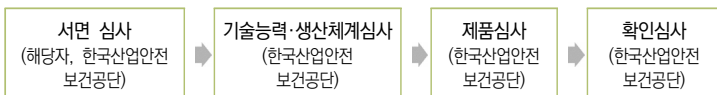
-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¹⁾, 자율안전확인 신고²⁾ 및 안전검사³⁾ 제도 운영

■ 사업내용

- (대상 설비) 안전인증 10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3종, 안전검사 13종
 - (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자율안전확인신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인쇄기
 - (안전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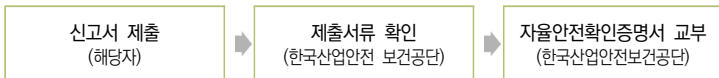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절차)

- 안전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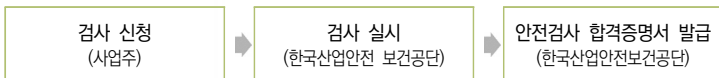


- 1)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2)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3)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 사업수행기관

기 관	업무범위			대표번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안전보건공단	전기종	전기종	전기종	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	전기종 (단, 안전관리 수탁 사업장은 제외)	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전기종	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	-			1577-7514

127 유해작업환경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비용지원, 질식 위험영역 관리, 석면 등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노출정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위주)
- 지원내용
 - ▶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원
 - 질식 고위험·취약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예방 장비를 적시에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및 민간 산업보건 전문기관 수준향상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신뢰성 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의 수준 향상 유도
 - ▶ 근로자 화학물질 노출정보 제공
 - 근로자가 취급하는 미지의 화학물질 유해성 및 노출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 ▶ 석면 취급작업의 체계적 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수준 향상을 통해 석면에 의한 직업병 사전예방
 -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전문기관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보건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등 기초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
 - ▶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 필수노동자의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한 노동자 건강보호

128 근로자 건강보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적시대응,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활동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달성
- 직업성질환의 업무관련성 규명, 안전보건서비스 기관의 신뢰성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정보관리를 통해 근로자 업무상질병 예방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설치·운영
 -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 상담 등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새롭게 발생하거나 인자별·시기별·지역별로 발생하는 산업보건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컨설팅 및 인증
 - ▶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 미세먼지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에 대한 마스크 배포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 교육을 통한 사업장 자율관리 유도
 - ▶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안착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고객응대종사의 정신건강 보호

- ▶ 직업병 역학조사 및 안전보건서비스기관 정도관리
 -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 특수·진폐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를 통한 민간기관의 진단·분석 수준향상 및 신뢰성 제고
-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및 독성시험을 통해 화학물질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여 노동자 건강보호
 -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시험·평가를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 사고 예방에 기여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국내 화학물질·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받고, 대체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을 통하여 국가주도의 국내 유통 화학물질정보 종합관리 체계 구축

129 산재예방시설 용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544-308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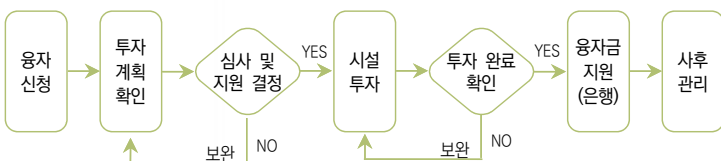
■ 사업 목적

-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산재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용자·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 주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 조건: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고정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내용
 - 용자금 지원 신청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확인, 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용자금 지원 대상자(우선순위)는 용자금 지원 심사위원회 “용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
 - 용자금 지원 이후 용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13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544-308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사업목적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 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 ②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에 한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 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 ③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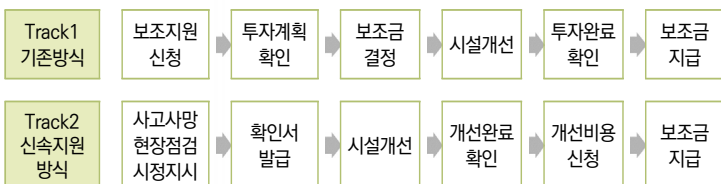
● 자원내용

- 점검·감독·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용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 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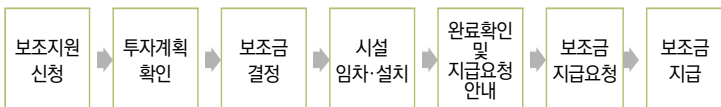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업목적

-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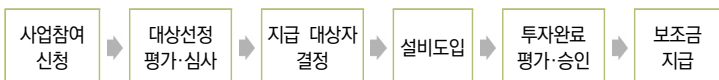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① (위험기계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 안전 검사 대상기계(6종*)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 ② (위험공정개선)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또는 고위험 3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에 한함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 지원내용

구 분	위험기계교체	위험공정개선
지원품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설비의 교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정의 개선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자부담금납부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중에서 선택 ※ 이동식기계 교체는 금융방식(리스, 할부)으로만 가능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131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 산재보험료 할인*

* ①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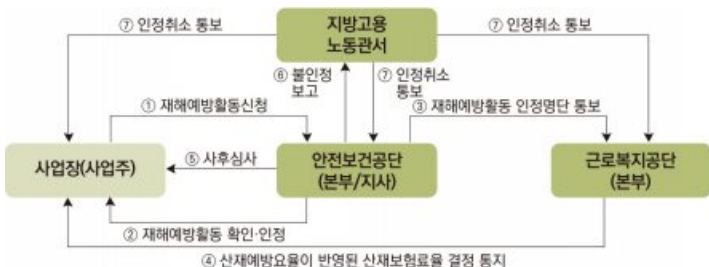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 적용

- (재해예방활동 인정)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노동시간 조기 단축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21.6.30까지

- 산재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 20%
 - 사업주교육 : 10%

-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법·제도 운영·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 (안전보건공단)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결정 및 통지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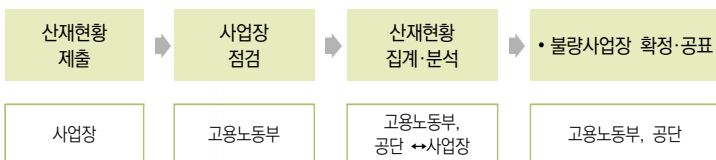
13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5)

■ 사업개요

- (목적)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을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대상)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

■ 사업 절차



■ 사업내용

- (사업장 점검·지도)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청업체 산업재해현황 파악 여부 등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
- (산재현황 집계·분석) 산재현황DB와 연계하여 해당 원청별로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자 등 현황 집계·분석
- (확정 및 공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필요 시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심사), 최종 확정하여 불량사업장 공표

133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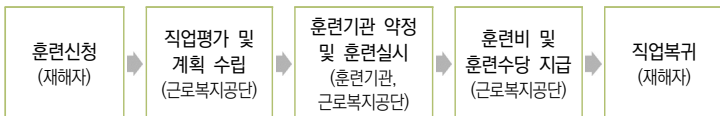
-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지원내용: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구분	급여	예산
신청기간	장해등급판정일부터 3년 이내(*'20.2.1.이후 대상자)	장해등급판정일부터 1년~3년 이내(*'20.1.31.이전 대상자)
훈련비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 그 외 훈련: 6백만원 한도	
훈련기간	최대 12개월	
훈련수당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의 50% 지급
	월 출석율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과정,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업추진체계



134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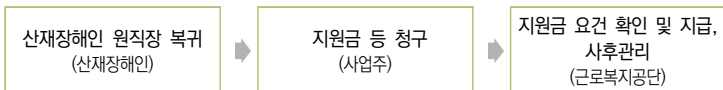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 사업비 30.9억원('22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사업추진체계



135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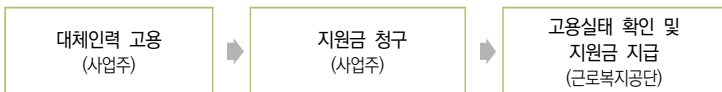
-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비 31.7억원('22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 지원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일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 사업추진체계



136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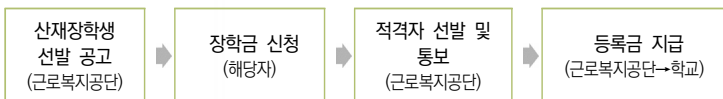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 · 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환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 그 배우자 및 자녀
-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최고지급액 500만원 범위 내)
- 선발대상: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
- 지원기간: 선발시점부터 졸업까지(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 사업추진체계



13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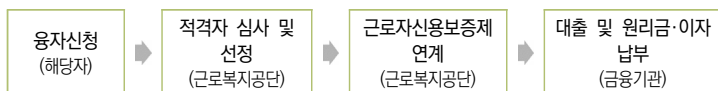
-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용자신청일 기준)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훈례비·장례비에 한정)
- 지원내용: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훈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각 1,500만원 이내
- 이자율 및 상환방법: 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훈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사업자금·주택이전비: 수시접수
 - 차량구입비: 월 2회 선발(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 용자재원 부족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추진체계



138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사업목적

-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임시·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위로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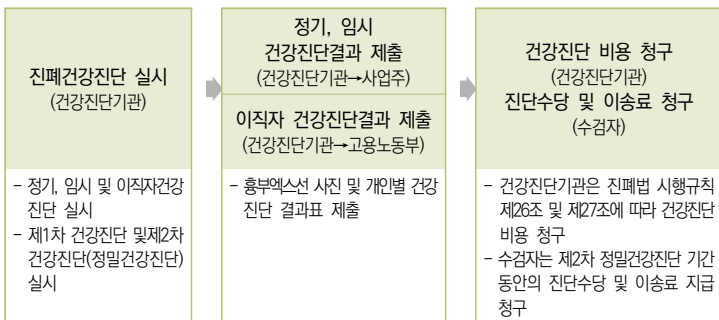
- 지원대상: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 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가 지급된 광업

- 지원내용: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정기·이직자·정밀건강진단 비용) 및 부대비용(진단수당, 이송료) 지급

* 진단수당 : 1일당 50,000원

■ 사업추진체계



139 진폐위로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사업목적

-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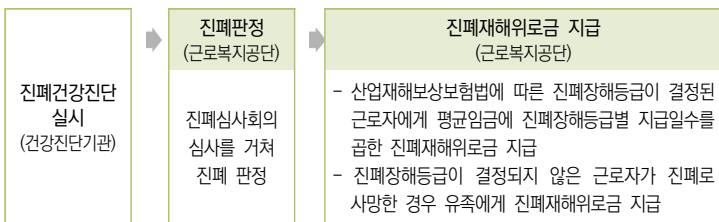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 지원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을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 제1급(1,040일) ~ 제13급(215일)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 사업추진체계



12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140 근로시간 면제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Ⅰ 도입배경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Ⅰ 주요내용

-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약·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유급 인정
-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 근로시간면제 한도

● 조합원 규모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지역분포별

대 상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전체 조합원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1,000명 이상인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사업 또는 사업장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 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②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4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복수노조 설립 허용

- '11.7.1.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도입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함
 -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 가능
-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 현격한 근로조건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통합* 가능
 - *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21.7.6. 개정 노조법 시행)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 ①자율적 단일화 → ②과반수 노동조합 → ③공동교섭대표단(노사자율 → 안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만 참여

■ 공정대표의무제도 도입

-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142 노동쟁의 조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개 요

-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

조 정

-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 지도록 설득하고,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노사관계 ·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개시 →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시 조정 성립 및 노동쟁의 종결, 조정 불성립 시 정당한 파업 가능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각 10일, 15일 이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교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연장불가

종 재

- 조정과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①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또는 ②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개시
 -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할 수 없음
- 교원 노동관계는 ①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②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③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시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 당해 사건은 중재에 회부*

*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Ⅰ 긴급조정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 통상의 조정제도만으로 그 해결이 부적절한 경우 행하여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1조 제1항)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함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 긴급조정 결정 공표·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통고(고용노동부장관)
→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재개 불가) →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 수락 및 중재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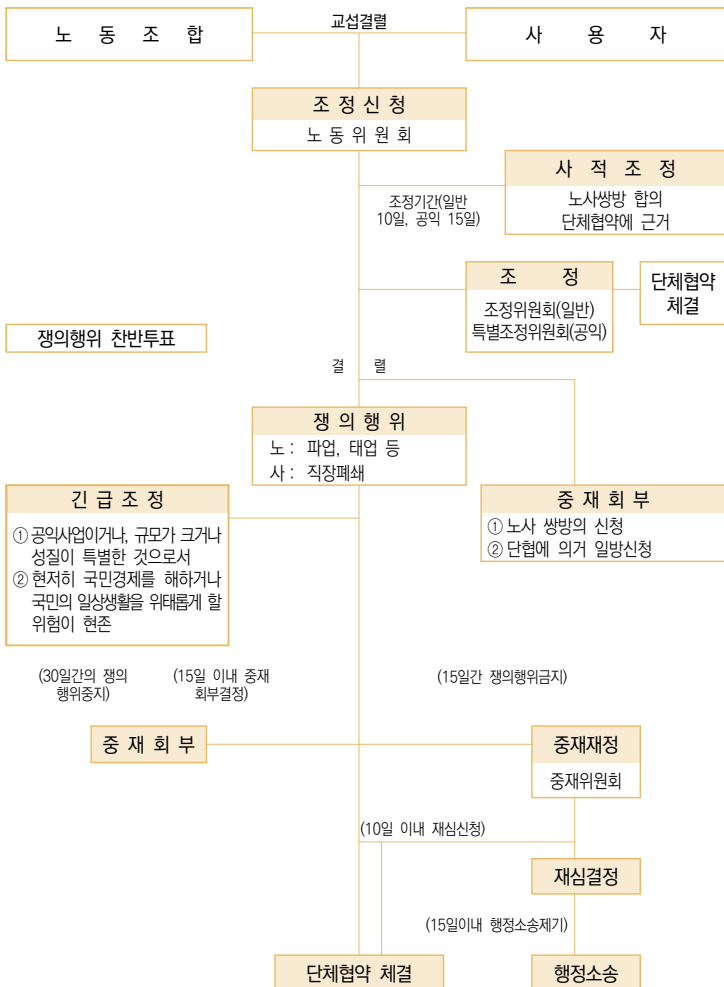
Ⅰ 사적 조정·중재

- 노사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적 조정 시에도 공적 조정의 조정전치기간, 중재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적 조정과 같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 노사 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가능

노동쟁의 조정 절차



143 노사협의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목 적

-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근 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설치대상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구 성

- 동수의 근로자·사용자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내)

〈근로자위원 구성〉

-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 운 영

-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임 무

- 협의 사항: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7개 사항
- 의결 사항: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항
- 보고 사항: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

144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부당노동행위란?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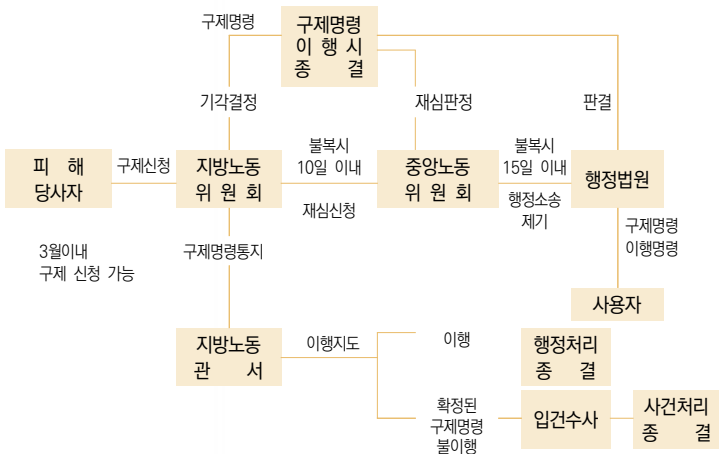
■ 부당노동행위 사례(예시)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대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반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입·방해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
-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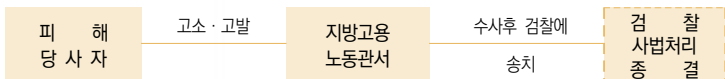
■ 구제절차

-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82조제1항)
 - 다만,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82조제2항)

〈구제신청절차〉



-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90조)
 - 부당노동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



145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 개 요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구제신청 방법

-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 처리절차

-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연장 가능)하고,
 - 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송부
 - 다만, 당사자 간 '화해'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 종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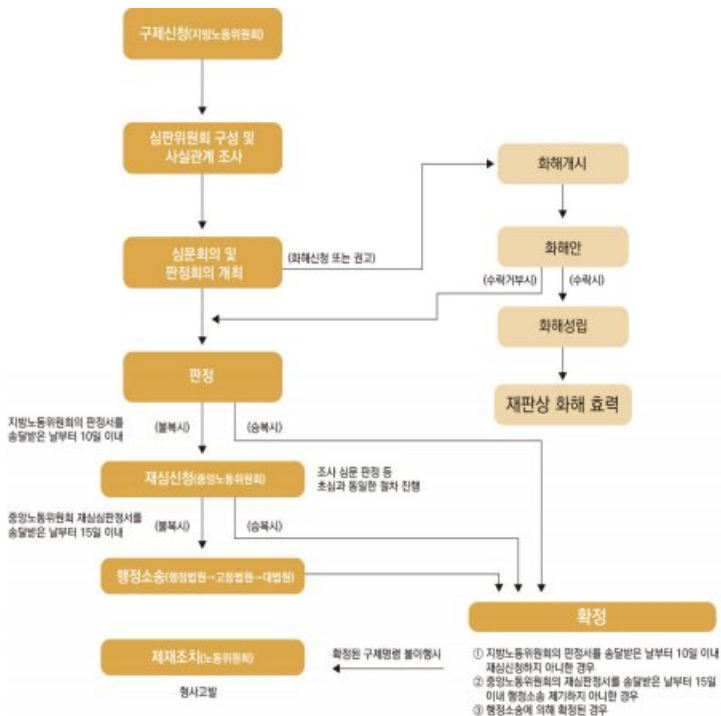
-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근로자만 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 지원 내용: 이유서·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구제신청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

참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146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노사발전재단(☎ 02-6021-1059-63),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사업목적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일터 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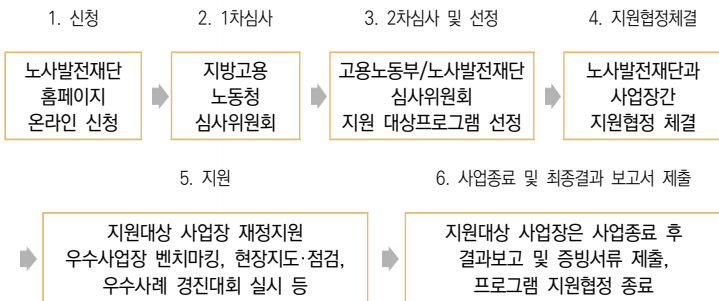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하였거나, 3년 연속 지원 받은 후 1년 미경과 사업장
-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3천만원, 단체 사업장 6천만원 한도로 지원
 - * 총 프로그램 예산액의 10% 이상 자체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30% 이상)
- 지원대상 프로그램(2가지 이상 필수 선택)

분 야	필수 프로그램 세부내용(예시)
1. 공생발전 프로그램	1-1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2 원·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2.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2-1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2-2 비정규직·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3. (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3-1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3-3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4.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4-1 비정규직·파견·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통해 접수

■ 사업추진체계



147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01, 759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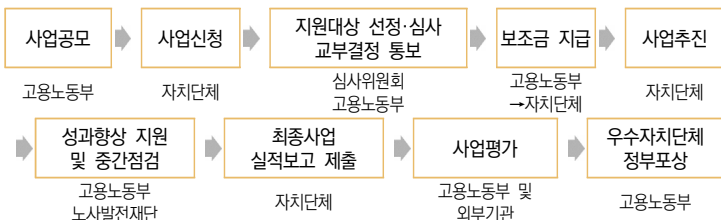
사업목적

- 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 (지원내용)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원
 - *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80백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재정자립도 고려 광역은 45~55%, 기초 최대 15~25% 지방비 매칭 조건 지원)
 - 본회의 및 하부협의체 개최 비용,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제 관련 지역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등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추진, 광역지자체 사무국 운영비 등

사업추진체계



148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고용노동부(☎ 044-202-7590), 노사발전재단(☎ 02-6021-106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사업목적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신청방법

구분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대상(大賞)
신청기간	2022년 상반기 중	2022년 하반기 중
접 수 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선정공고	6월말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10월말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단, 사업장 단위 신청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	▶ 2020 ~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외사유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노사문화 대상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신청서류	▶ 신청서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한글파일 제출), 증빙자료(한글파일 또는 PDF 제출) ▶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 반드시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을 구분해 신청

■ 선정절차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유효기간: 우수기업·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노사문화 대 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담당기관
〈 행정상 우대 〉			
■ 정부포상	대통령·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인증서·인증패	고용노동부
■ 정기근로감독	면 제	면 제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	2.5점 가점	2.5점 가점	
■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시	우수기업 표시	우수기업 표시	
■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	제작·송부	-	
■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0.1점 가점	0.1점 가점	조달청
■ 일반공역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국방부
■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일반기업과 구분하여 별도 심사	일반기업과 구분하여 별도 심사	국세청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2점 가점	2점 가점	중소기업벤처부
■ 현역인원배정시 우대	2점 가점	2점 가점	
■ 크린사업 인증시 우대	최우선 선정	10점 가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금융상 우대 〉			
■ 대출금리	0.1%p 우대	0.1%p 우대	농협
■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우 대	우 대	신한, 하나 제일, 국민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 대	우 대	신용보증기금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149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031-760--7775),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eli.kr)

■ 사업목적

-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를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용·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도모
 - 각 지역별 노사관계단체 및 지도자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적기반 조성

■ 교육 운영기관

- 6개 권역별 운영기관에서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운영
 - * ('21년 운영기관) 서울권(고려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인노무사회), 경기·충북권(한경대), 부산·경남권(부산대, 경남경총), 대구·경북권(대구대), 광주·전라권(전남대), 대전·충청권(한남대)

■ 교육생 선발

- 매년 2월 중 각급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한 신청자 중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교육생 선발(기관당 정원 20명 ~ 30명)
 - * 중소기업 무노조 근로자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사 공동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

■ 교육기간(시간) 및 교육내용

- 매년 3월~12월 중 최소 5개월(60H)에서 최대 10개월(120H)범위 내에서 기관별 제 형편에 따라 자체적 실시
 - 노사관계 이론, 노동관계법·제도의 이해 등 노사관계 분야(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 기타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특강, 세미나, 국내·외 연수, 비대면 교육 실시
 - *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한하여 수료 인정

■ 교육비용

- 운영기관은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교재비, 국내·외 연수비용 등을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13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으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월 80만원(최대 1년간)지원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구직단념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시행	구직단념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시작	· 구직단념청년 등의 취업역량·자신감 강화, 진로 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①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운영비, ②구직단념청년 등에게는 프로그램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참여 실비(20만원)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구직단념청년 등(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구직단념청년 등)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7,000명 ·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 (지방자치단체) 사업운영비(청년 1인당 80만원) ·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이수 시 1인당 2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22.1.1)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여건 형성 지원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매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현재 근로기간 1년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10명 이하 사업장은 3명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지방이양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 2022년 지방이양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에서 제외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및 맞돌봄 문화 확산	〈3+3 부모육아휴직제〉 · (지원대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부모 각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2~300만원)로 지급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지원대상)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허용 시 월 200만원(최초 3개월)을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은 폐지
직장어린이집 지원	인건지 지원단가 인상을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및 직장보육시설 확대	·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 중소기업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 → 138만원(15%)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역할 강화	· (의무고용률 상향)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3.6%('22년~'23년), 3.8%('24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타지원금과 차액지급 및 일부 중복지급 허용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지급 가능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소규모사업주의 장애인 신규고용 유도	·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 키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단계별 전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 안정 도모	· 저소득층 참여유형(2유형) 참여기준 중위소득 변경 -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참여유형 가능 - 중위소득 60%이하일 경우 2유형 구직활동 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	IT특화 맞춤훈련센터 설립	· IT특화 맞춤훈련센터 1개소 신설(4분기 예정)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 임금액 인상	· 근로지원인 임금액: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9,160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생 수당(일비) 인상	· 1일 18,000원 지급 (훈련 출석일 수 비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수혜자 확대를 위한 참여자 수당 인상과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슈퍼바이저 지원금 지원	· 기본운영비: 월 87.5만원(월 60시간 기준) · 슈퍼바이저 지원금: 월 50만원(70개소) · 연계수당: 연계자 1인당 20만원 · 참여자수당: 4,500원(최대10회)
장애인 보조공학기 기 지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 지원 근거 마련	· 보조공학기 지원대상 확대 (당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및 장애인근로자 → (변경)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및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월 5만원(전용카드 사용)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대상 * (당초)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 (변경)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지원대상 확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추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 판매시설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판정 연계 서비스 확대	· 대상사업 :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 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출퇴근 비용지원, 현장평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차 고용안전망 강화	· (지원 규모 확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 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지원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 수당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예외)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소 규모) ②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③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④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⑤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한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지원요건) 월 평균보수 230만원(과세 기준)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6.16.)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및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하고 사용자 책임 부과 * 인증요건: ①법인, ②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 ③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갖출 것, ④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을 갖출 것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신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 가사서비스 종류 및 시간,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이용요금, 안전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반드시 포함 · (근로조건 보호)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 적용하되, 가사서비스 근로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규정 * ▲ 최소근로시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 보장 ▲ 휴게시간: 하루 내 고용임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이용계약으로 보호) ▲ 유급휴일·휴가: 호출근로의 특성을 고려,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확대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21.1) 30인 이상 사업장 → ('22.1) 1인 이상 사업장 · (내용)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 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
K-Digital Training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21.6.9)에 따라 SW인력난 대응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추진	· K-Digital Training 내 새로운 유형의 기업주도형 훈련유형을 신설하여 총 4가지 훈련유형을 운영, 다양한 민간 훈련기관·선도기업·우수대학 등의 참여를 통해 여러 지역에 양질의 훈련 제공 예정 ①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②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벤처 또는 스타트업 등 기업이 속한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과정 ③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삼성, 포스코, KT, SK하이닉스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훈련과정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④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내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과정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중소기업 재직자의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경력진단 및 설계 지원	· (지원대상) 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 ('22년 5,000명) ·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자부담 10%) · (지원내용)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지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주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훈련방식 변화에 대응한 지원 요건 완화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 시간' 요건 완화 ·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現: 대기업 2일 16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일원화 · 훈련기간 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8→4시간으로 완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입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강화	· (가입대상)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 · (제도설정)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는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을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 (재정지원)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 · 최저수준의 수수료가 적용(0.2% 예정)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액 결정, 시행	· (최저임금액)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산입범위)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 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 산입 * (예시) 주 40시간 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 × 209시간 × 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 × 209시간 × 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됨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① 위험기계교체(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칸베이어, 롤러기 ② 위험공정개선(부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고위험 3대 업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 (지원한도 및 비율) ① 위험기계교체: 최대 7천만원,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② 위험공정개선: 최대 1억원,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한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시기) '22.1.27.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간접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은 '24.1.27. 부터 적용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들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의무위반시 처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처벌, 법인은 양벌규정 적용 * ①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②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 (공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등 발생사실 공표

14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4541	02) 2231-0009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4541	02) 2004-7301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코스모빌딩	06671	02) 580-4900
서울강남지청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06278	02) 584-0009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06192	02) 3468-4794
서울동부지청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05717	02) 403-0009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3~4층	05717	02) 2142-8924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1, 2층	04784	02-2047-9900
서울서부지청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빌딩 3층, 5층	04157	02) 713-0009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플라자 1층, 4층, 5층	04157	02) 2077-6000
서울남부지청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7262	02) 2639-2100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7262	02) 2639-2300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2, 3층	07526	02) 2063-6700
서울북부지청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01137	02) 950-9880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01762	02) 2171-1700
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36 풍양빌딩 2,3,6,8,10층	01161	02-2171-1914
서울관악지청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	08390	02) 3281-0009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동포스트타워 2, 3층	08378	02) 3282-9200
충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법합동청사 2-4층	22101	032) 460-4545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21559	032) 460-4701
인천북부지청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21068	032) 540-7910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21060	032) 540-5641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4-8층 (원당동)	22865	032) 540-2001
강화고용복지센터	인천 강화읍 강화대로 395 준프라자 5층	23035	032) 540-799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 석천로 207	14537	032) 714-8700
부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 뉴월드빌딩 (중동)	14530	032) 320-8900
김포고용복지*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3~5층	10083	031) 999-0900
의정부지청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11787	031) 877-0009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 1~2층	11674	031) 828-0900
포천고용복지센터	경기 포천시 중앙로62 (신읍동5-17) 1층	11149	031) 850-7690
남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빌딩 3~4층	12237	031) 560-1919
동두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11357	031) 860-1700
구리고용복지*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11921	031) 560-5800
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11498	031) 849-2300
고양지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10497	031) 931-2800
고양고용복지*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10364	031) 920-3937
파주고용복지*센터	경기 파주 중앙로 328 MH타워 8층	10930	031) 860-0401
경기지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16324	031) 259-0204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2~4층	16483	031) 231-7864
용인고용복지*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앰플러스빌딩	16977	031) 289-2210
화성고용복지*센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85 이원타워 7층	18302	031) 290-0800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3627	031) 788-1505
성남고용복지*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3627	031) 739-3177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경안동)	12757	031) 799-2760
양평고용복지센터	경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11, 3층	12551	031) 740-6781
이천고용복지*센터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창전동)	17356	031) 644-3820
여주고용복지센터	경기 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 5층	12622	031) 740-6790
하남고용복지*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풍산동)	12919	031) 730-7000
안양지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14087	031) 463-7300
안양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타워 3~4층	14001	031) 463-0700
군포고용복지센터	경기 군포시 군포로 522, 5층	15855	031) 463-7610
광명고용복지*센터	경기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1~2층 (철산동)	14216	02) 2680-1500
의왕고용복지*센터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2층 (포일동)	16004	031) 463-7460
안산지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15358	031) 412-1992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안산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15357	031) 412-6600
시흥고용복지*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 3층 (정왕동)	15049	031) 496-1900
평택지청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17739	031) 646-1114
평택고용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2층	17739	031) 646-1205
안성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성시 장기로 131, 3층 (복산동)	17591	031) 686-1705
오산고용복지*센터	경기 경기동로 51, 오산고용센터 (오산동)	18131	031) 8024-9805
강원지청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24233	033) 269-3551
춘천고용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24415	033) 250-1900
가평고용복지센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 1층	12413	031) 580-0901
홍천고용복지센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56 로하스빌딩 7층	25139	033) 439-1901
강릉지청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	25535	033) 650-2500
강릉고용복지*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 (교동)	25528	033) 610-1919
동해고용복지센터	강원 동해시 동해대로 4921 (나안동 156-7) KT북평빌딩 1층	25810	033) 539-1901
속초고용복지*센터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 (조양동)	24872	033) 630-1919
원주지청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	26387	033) 769-0800
원주고용복지*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6448	033) 769-0900
태백지청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26015	033) 552-0009
태백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2층 (황지동)	26015	033) 552-8605
삼척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25929	033) 570-1900
영월출장소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232	033) 374-0009
영월고용복지*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232	033) 371-626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47065	051) 853-0009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47209	051) 860-1919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0, 정우해리터지빌딩 8층~10층 (하단동)	49426	051) 520-4900
부산동부지청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46332	051) 559-6688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광안동)	48267	051) 760-7100
부산북부지청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 (덕포동)	46938	051) 309-1500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코스모북부산빌딩 (화명동)	46524	051) 330-9900
창원지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28	51439	055) 239-65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마서로 60 (상남동)	51503	055) 239-0900
마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3-5층 (석전동)	51316	055) 259-1500
함안고용복지센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경길 32 함안메디컬센터 4층	52040	055) 278-9210
창녕고용복지센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8 성동빌딩 9층	50323	055) 278-9250
울산지청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 (옥동)	44664	052) 272-0009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06	44717	052) 228-1919
양산지청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석산리)	50635	055) 387-0009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부원동)	50925	055) 330-6400
밀양고용복지*센터	경남 밀양시 백민로 69, 2층, 4층	50423	055) 350-2800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중부동)	50629	055) 379-2400
진주지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 43	52629	055) 752-0009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5층 (장대동)	52755	055) 753-9090
사천고용복지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9-1 (4층)	52517	055) 760-6590
하동고용복지*센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52345	055) 884-8219
거창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	50143	055) 949-6589
진주지청 별관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강남동 ABL)	52708	055) 753-9090
통영지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3016	055) 645-0009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3016	055) 650-1800
고성고용복지센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75 (양강빌딩 5층)	52942	055) 650-1841
거제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6 우형빌딩 3층 (고현동)	53252	055) 730-19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범어동 734)	42140	053) 667-6200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범어동)	42020	053) 667-6000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태전동)	41462	053) 606-8000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대구 동구 아양로 22 (신암동)	41207	053) 667-6900
경산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산시 중앙로85 3, 4층 (중방동)	38622	053) 667-6800
영천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천시 금원로 63, 2층	38891	054) 778-2591
대구서부지청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42768	053) 605-900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내당동)	41857	053) 605-6500
칠곡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39890	054) 970-1919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42984	053) 605-951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포항지청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대잠동)	37761	054) 271-6700
포항고용복지*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죽도동)	37751	054) 280-3000
울진출장센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7길 10	36324	054) 783-0841
경주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3층, 7층, 8층 (동천동)	38104	054) 778-2500
포항지청 지역협력과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3층	37751	054) 288-3500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2번길 8, 1층	37761	054) 271-6700
구미지청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임수동 92-31)	39390	054) 450-3500
구미고용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39281	054) 440-3300
김천고용복지*센터	경북 김천시 신양2길 46 (신음동 792-9)	39547	054) 429-8900
영주지청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6088	054) 639-1111
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6088	054) 639-1111
문경고용복지*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 4층	36977	054) 559-8200
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상주시 왕산로155 대흥빌딩 1층	37212	054) 559-8280
안동지청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6643	054) 851-8000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6643	054) 851-8061
의성고용복지센터	경북 의성읍 문소3길 102-1, 4층	37337	054) 851-8150
예천고용복지센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 26, 2층	36827	054) 851-818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합동청사	61011	062) 975-6200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 (북동)	61240	062) 609-8500
나주고용복지센터	전남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치타워 4층 401	58217	061) 280-0183
화순고용복지센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1층	58135	061) 280-0155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2~3층 (월곡동)	62328	062) 960-3200
영광고용복지센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	57036	061) 280-0158
제주근로개선지도과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63219	064) 728-6100
전주지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인후동 1가)	55014	063) 240-3400
전주고용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54936	063) 270-9100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1층 (하정동)	55770	063) 630-3900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수성동)	56178	063) 530-7500
익산지청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여양동 626-1)	54552	063) 839-0008
익산고용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남중동)	54619	063) 840-65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김제고용복지*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김제지역자활센터 2층 (요촌동)	54392	063) 540-8400
군산지청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 (조촌동 852-1)	54076	063) 452-0009
군산고용복지*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조촌동 752-4)	54079	063) 450-0600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북 부안을 번영로 145, 2층 (서외리 3-1)	56308	063) 580-0501
고창고용복지센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30 고창선운사 빌딩 1층	56431	063) 580-0540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58691	061) 280-0100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59037	061) 530-2900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상동)	58748	061) 280-0500
무안고용복지센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61	58524	061) 280-0160
영암고용복지센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125외3필지 우진레디앙스 상가동 1층	58418	061) 280-0190
여수지청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웅천동)	59691	061) 650-0108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조례동)	57966	061) 720-9114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웅천동)	59691	061) 650-0155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종마로 410 (종마동) 커뮤니티센터 8-9층	57777	061) 798-19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둔산동)	35238	042) 480-6290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 서구 문정로 56 (탄방동)	35262	042) 480-6000
금산고용복지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70 KT금산지점 1층	32740	041) 731-8690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4층 (신관동)	32584	041) 851-8501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내동)	32989	041) 731-8600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 조치원을 터미널안길 60	30026	044) 865-3219
청주지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28798	043) 299-1114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월드피아오피스텔	28575	043) 230-6700
진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진천군 덕산을 자안로9, 4층 402호, 403호	27871	043) 229-0791
옥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길 4 문화회관 별관 3층	29032	043) 730-4100
천안지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31107	041) 560-2800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빌딩 2-5층, 9층 (성정동)	31110	041) 620-74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당진고용복지센터	충남 당진시 시청2로 12 제일빌딩 2층	31774	041) 620-7456
예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0 더예당 2층	32435	041) 620-9511
아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아산시 시청길 29 아산시민문화복지회관	31513	041) 570-5500
충주지청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3-3	27428	043) 840-4000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 (문화동)	27428	043) 850-4000
제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27184	043) 640-9310
음성고용복지*센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로 213, 2층	27630	043) 880-8600
보령지청	충남 보령시 옥마로 42	33482	041) 931-6640
서산출장소	충남 서산시 쌍면남1로 37 (잠흥동)	31979	041) 661-5694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석남동)	31995	041) 669-1919
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36 태광빌딩 2층	32147	041) 661-5691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33474	041) 930-6200
부여고용복지센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동업길 6, 3층 (성모크리닉센터)	33153	041) 930-6236
서천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109번길 25 1층(서천경제진흥동통합센터)	33646	041) 930-6244
홍성고용복지센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7, 3층 (불란서빌딩)	32226	041) 930-6248
고객상담센터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44543	국번없이 1350
중앙노동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4층	30117	044) 202-8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07295	02) 3218-60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합동청사 4층	46332	051) 559-37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율전동) SK허브블루 4층	16360	031) 259-50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2층	35208	042) 520-807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7층	61011	062) 975-61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	42140	053) 667-65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47, 10층	51393	055) 239-80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법합동청사 2~4층	22101	032) 430-310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 남구 두왕로 318, 4층	44740	052) 208-00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3층	24233	033) 269-3404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5층	28798	043) 299-12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간산로 251	55014	063) 240-1600
제주특별자치도지노위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63219	064) 710-7990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	세종 법원로 82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	30148	044) 202-8499
최저임금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03호	30117	044) 202-84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11호	30117	044) 202-7912
고용보험심사관실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4호	30117	044) 202-7920

2022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2022년 1월 발행

발행 : 고용노동부

편집 : 혁신행정담당관실

044) 202-7053, 7055

044) 202-8022

인쇄 : 열림기획(주)

044) 868-5055
